

#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1998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要約

I. 序論

1. 최저임금제와 영향률
2. 생계비의 의미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출경과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概要

1.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정의
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의 구조
3. 최임심생계비 산정개요

III. 生計費 算定過程

1. 소비지출
2. 비소비지출

IV.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1.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2. 1인가구 18세에 대한 연령조정
3. 생계비 추정에 대한 과제

V. 最低賃金制의 現況과 改善方向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황
2. 최저임금제와 실업과의 관계
3.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4. 최저임금제와 임금불평등도 및 빈곤과의 관계

參考文獻

[附錄 1] 最低賃金制에 관한 ILO 協約

[附錄 2] 1997年 最低賃金生計費 算定

表目次

- <표 I-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 <표 I-2> 적용년도별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 <표 II-1>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 <표 III-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 <표 III-2> 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소비지출액 비교
- <표 III-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 <표 III-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 <표 III-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 <표 III-6> 적용환산승수(1995~97년도 3개년 평균치)
- <표 III-7> 국민영양보고서에 의한 총섭취 끼니수 중의 외식빈도 및 비율
- <표 III-8> 식품군별 1인 1일 권장·공급 및 섭취량 비교
- <표 III-9> 국민 1인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 <표 III-10> 순식료품비를 위한 식료품 명세(1인 18세 근로자, 1일)
- <표 III-11>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 <표 III-12>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 <표 III-13> 가구별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 <표 III-14> 1997년 소득세 세율
- <표 III-15>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 <표 III-16> 표준보수월액 조건표
- <표 III-17> 오물세
- <표 III-18>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비소비지출
- <표 IV-1> 가구원수별 평균연령
- <표 IV-2> 가구원수별 생계비
- <표 V-1> 평균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 <표 V-2>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 그림目次

- [그림 I-1] 생계비의 종류
- [그림 II-1] 소비지출액의 누적도수 분포도
- [그림 II-2] 표준생계비와 가구구성
- [그림 II-3]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 [그림 III-1] 식료품비 산정방법
- [그림 IV-1]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 [그림 V-1]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의 추이
- [그림 V-2] 연령별 법정최저임금의 국제비교(1990대 초)
- [그림 V-3] 수요독점과 최저임금
- [그림 V-4] 선진국의 소득분포 변화

## <要約>

### 1. 산출방식

#### 가. 소비지출

-식료품비: 마켓-바스켓(Market-Basket) 방식

· 순식품비: 18세 기준 1일 단신근로자의 식료품비는 국민영양 권장량(1996년 기준)을 토대로 식품위생연구원에서 산출. 이를 근거로 『월간물가지료』와 『종합물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식품비의 가격을 산정

· 외식비: 전체 식품비의 20%

-비식료품비: Multiple 방식(환산승수 방식)

'97년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회귀분석을 통해 1인 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을 구한 다음 전체 연령그룹의 소비지출액에 대한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지출액 비율인 80%를 감안하여 산출

#### 나. 비소비지출

소비지출(식료품 포함)을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근로소득치로 표준소득조건표를 이용하여 조세액, 사회보장 지출, 기타 비소비를 계산

-의료보험: 표준보수월액에 1997년 12월 기준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평균보험료율 3.14%를 적용하여 산출(본인부담 50%)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20/1,000

-고용보험: 추정근로소득 × 3/1,000

-기타 비소비: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1인가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617원(전국평균치)으로 산정

-저축: 비소비지출 산출을 위한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 20%를 반영하고 생계비에는 비포함

#### 다. 참고사항

-기존의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을 원용하되 산정과정에서 성년 1인가구에 대한 연령별 조정치(80%)를 감안하여 산출한 18세 단신근로자 표준생계비로 월 384,422원을 제시(준최저임금(subminimum wage) 개념)

### 2. 산출결과

-월임금: 1인가구 기준 384,422원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계산방법 1년전(364,866) 대비 5.4% 상승. 이는 전년도 월최저임금 335,610 대비 14.5% 상승

-시간당임금: 월 226시간 기준 1,701원이며, 전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485원 대비 14.5% 상승

#### <최저임금 비교표>

	(단위 : 원)	
	월 임 금	시간당임금
1998년 연구원안	384,422	1,701
1997년 연구원안	364,866	1,614
1997년 최저임금	335,610	1,485

<생계비의 구성비율>

(단위 : 원, %)

	금 액	구 성 비
생 계 비(A+B)	384,422	100.00
소비지출(A)	364,959	94.94
식 료 품	128,660	33.47
주 거 비	73,244	19.05
광열·수도	17,208	4.48
가구집기·가사용품	10,300	2.68
피복·신발	22,385	5.82
보건·의료	16,411	4.27
교육·교양·오락	13,313	3.46
교통·통신	26,539	6.90
기타 소비지출	56,900	14.80
비소비지출(B)	19,463	5.06
조 세	0	0.00
사회보장분담금	18,847	4.90
기타 비소비	617	0.16

<품목별 최저생계비 증감률>

(단위 : 원, %)

	1996	1997	증감률
소비지출계	347,134	364,959	5.13
식 료 품	117,920	128,660	9.11
주 거 비	81,970	73,244	-10.65
광열·수도	14,252	17,208	20.74
가구·집기	9,794	10,300	5.16
피복·신발	18,749	22,385	19.39
보건·의료	14,081	16,411	16.55
교육·교양	13,398	13,313	-0.64
교통·통신	24,366	26,539	8.92
기타 소비	52,605	56,900	8.17
비소비지출	17,732	19,463	9.76
표준생계비	368,866	384,422	5.36

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결과표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56,199	364,959	827,178	1,124,790	1,338,352	1,475,952
식료품	160,825	128,660	291,993	397,608	472,159	521,860
주거비	91,555	73,244	161,981	211,280	246,493	257,067
광열·수도	21,510	17,208	40,152	54,492	65,964	73,851
가구·집기	12,875	10,300	22,361	29,815	33,881	35,236
피복·신발	27,981	22,385	49,880	65,695	75,428	79,078
보건·의료	20,514	16,411	36,468	47,865	53,943	56,982
교육·교양	16,641	13,313	40,413	76,072	116,485	166,407
교통·통신	33,174	26,539	59,363	76,823	87,299	90,791
기타소비	71,126	56,900	125,838	166,872	188,756	196,963
영결계수	35.3	35.3	35.1	35.2	35.1	35.2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는 전연령그룹의 0.8인바, 1인가구 소비지출 연구 결과에 0.8을 곱한 준최저임금액상의 수치임.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456,199	364,959	827,178	1,124,790	1,338,352	1,475,952
추정근로소득	570,248	456,198	1,033,973	1,405,987	1,672,940	1,844,940
비소비지출	19,463	19,463	48,429	73,726	99,015	114,114
조세 및 사회보장	18,847	18,847	47,196	71,877	96,549	111,032
조세액	0	0	13,035	23,748	41,550	48,377
소득세	0	0	11,850	21,589	37,772	43,979
주민세	0	0	1,185	2,159	3,777	4,398
사회보장분담금	18,847	18,847	34,161	48,129	54,999	62,655
의료보험	7,536	7,536	13,659	19,311	21,980	25,120
국민연금	9,600	9,600	17,400	24,600	28,000	32,000
고용보험료	1,711	1,711	3,102	4,218	5,019	5,535
기타비소비	617	617	1,233	1,850	2,466	3,083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는 전연령그룹의 0.8인바, 1인가구 소비지출 연구 결과에 0.8을 곱한 준최저임금액상의 수치임.

<가구원수별 생계비>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56,199	364,959	827,178	1,124,790	1,338,352	1,475,952
식료품	160,825	128,660	291,993	397,608	472,159	521,860
주거비	91,555	73,244	161,981	211,280	246,493	257,057
광열·수도	21,510	17,208	40,152	54,492	65,964	73,851
가구·집기	12,875	10,300	22,361	29,815	33,881	35,236
피복·신발	27,981	22,385	49,880	65,695	75,428	79,078
보건·의료	20,514	16,411	36,468	47,865	53,943	56,982
교육·교양	16,641	13,313	40,413	76,072	116,485	166,407
교통·통신	33,174	26,539	59,363	76,823	87,299	90,791
기타 소비	71,126	56,900	125,838	166,872	188,756	196,963
비소비지출	19,463	19,463	48,429	73,726	99,015	114,114
조세액	0	0	13,035	23,748	41,550	48,377
사회보장	18,847	18,847	34,161	48,129	54,999	62,655
기타비소비	617	617	1,233	1,850	2,466	3,083
취임심생계비	475,662	384,422	875,607	1,198,516	1,437,366	1,590,067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준취임금액의 수치임.

#### 4. 기타 중요사항

##### 1)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199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관련 2차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진원이 동의하였음. 그 이유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생계비관련 평균값들이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임.

##### 2)저축에 관한 사항

-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음.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한 바, 저축률을 20%로 계산함
- 기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여태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음
-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
-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음 - 소비지출계의 50% 이상 수준임(도시가계 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 3)외식비용

-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사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됨
-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함. 이유는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및 한국노총의 연구에서도 실제 외식은 20% 정도임
- 윤진호(한국노총 1996년 연구): 35%(외식 20%, 가공식품 15%)
- 도시가계: 42%(외식 24%, 기호 18%)

## I. 序論

본 연구는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계산되고 추정된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되었으며, 기존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와 과정이 제I장부터 제IV장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V장에는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서술되어 있다. 올해는 1988년에 최초로 시행된 최저임금법이 10년째를 맞는 해인 만큼 그동안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1. 최저임금제와 영향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저임금근로자보호제도이다.<sup>1)</sup>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정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의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셋째,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한다는 데 있다. 적용대상은 <표 I-2>에서 보듯이 1988년 도입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에만 국한하였고, 1989년에는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별 구분은 없다. 즉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그 사업체의 임시·일용,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시기는 1993년까지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9월 1일~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매년 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상승률이 노사간 임금교섭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최저임금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을 <표 I-2>에서 보면 1989년의 경우 수혜대상 영향률이 전체 근로자의 10.7% 수준으로 정점을 이룬적이 있으나 그후 계속해서 영향률이 줄어들어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률은 2.4% 정도이다.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표 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0.3~0.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비록 비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그 목표수치는 0.4~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sup>2)</sup>. 특히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음·식료품 물가가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석 \*) 본고의 작성에 있어 전산처리를 성실히 도와준 이화여대 이희숙 석사와 원고정리를 도와준 윤명희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주석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7. 5쪽)

주석 2) Ehrenberg and Smith(1994: 80) 참조



## 2. 생계비의 의의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표 I-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단위: 원, %)

	'88	'89	'90	'91	'92	'93	'94.1~ '94.8	'94.9~ '95.8	'95.9~ '96.8	'96.9~ '97.8	평균
(1) 최저임금 (시급)	462.50	600	690	820	925	1,005	1,085	1,170	1,275	1,400	
(2) 최저임금 (일급)	3,700	4,800	5,520	6,560	7,400	8,040	8,680	9,360	10,200	11,200	
(3) 최저임금 (월생산급)	111,000	144,000	165,600	192,700	200,050	227,130	245,210	264,420	288,150	316,400	
(4) 매월노동 정액급여	316,047	374,969	443,829	521,992	596,586	670,093	746,800	787,000 <sup>1)</sup>	876,466 <sup>2)</sup>	968,670 <sup>3)</sup>	
(5) (3)/(4) × 100	35.1	38.4	37.3	36.9	35.6	33.9	32.8	33.6	32.9	32.9	35

주: 1) 1994년과 1995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2) 1995년과 1996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3) 1996년과 1997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자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7. 12.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I-2> 적용년도별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단위: 개, 명, %)

	적용업종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수	수혜근로자	영향률
1988	10인이상제조업	34,984	2,266,675	94,410	4.2
1989	10인이상제조업 광업, 건설업	39,977	3,052,555	327,954	10.7
1990	10인이상전산업	78,016	4,386,041	187,405	4.3
1991	10인이상전산업	82,923	4,556,075	393,183	8.6
1992	10인이상전산업	88,771	4,620,164	391,502	8.5
1993	10인이상전산업	98,656	5,045,064	227,519	4.5
'94.1~'94.8	10인이상전산업	103,774	4,916,322	102,312	2.1
'94.9~'95.8	10인이상전산업	112,374	4,863,923	103,033	2.1
'95.9~'96.8	10인이상전산업	117,658	5,380,697	103,191	1.9
'96.9~'97.8	10인이상전사업	-	5,240,135	127,353	2.4
'97.9~'98.8	10인이상전사업	-	5,324,834	123,513	2.3

자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7. 12.

여기에서 생계비란 가계의 단위인 한 가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생계비 파악방법에 따라 크게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눌 수 있다.

실태생계비란 각 가구가 현실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조사한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하여 이론생계비란 일정한 생활규모(모형)를 설정하여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생계비는 정책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어떤 생활모형(수준)을 설정하는가에 의하여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생활모형으로서 표준적인 생활을 취하면 '표준생계비(Normal Level)', 최저생활을 설정하여 산출하면 '최저생계비(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가 된다. 이외에도 생계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구제 또는 생활보호가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수준인 '피구홀비(Pauper Level)', 그 위의 수준으로 단순히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머무는 '최저생존비(Minimum of Subsistence Level)'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있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유락생계비(Health and Decency Level)' 등이 있다.<sup>1)</sup> 결국 이러한 5가지 수준의 생계비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 다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생계비는 실제보다는 이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론생계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2)</sup>

우리나라에서 실태생계비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도시가계연보』로 발행)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근로자생계비조사」가 있다. 이론생계비로는 한국노총이 임금교섭 기초자료로 산정해 온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추계해 온 '최저생계비'가 대표적이며 그외 관련기관 또는 개별연구자들이 추계한 생계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I-1]이다.

[그림 I-1] 생계비의 종류



주석 1) 한국노총에서는 임금인상요구지침에서 이른바 생계비 규율로  
 유락생계비=표준생계비×1.5, 최저생계비=표준생계비×0.8, 최저생존비=표준생계비×0.5로  
 정한 바 있다.

주석 2) 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그간 매년 계속된 연구에서의 기존 분류에 따르고 있다.

###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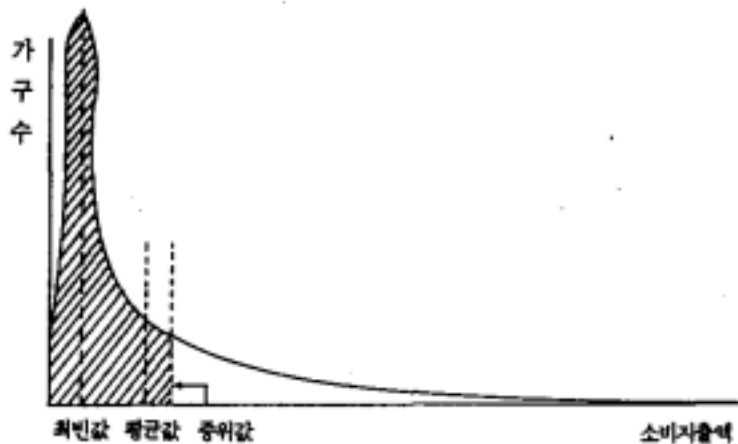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생계비는 산정목적과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가 산정되어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초기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노·사·정의 관련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88년에는 노·사,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근로자표준생계보고서」, 1988.11).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수준 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생계비로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생계비 및 최심위 사무국에서 조사하는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생계비가 같은 이론생계비 대비해 최빈값은 안정적이어서 주어진 계층분포의 대표성도 높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최소한 최빈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최빈값 주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분석시에 최빈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인 조정치를 각각의 소비지출액에 곱하여 이를 최저임금계층 소비지출액으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생계비 계산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자료인데, 1995년의 소비지출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1,000분위하여 누적도수 분포표를 구한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로그노말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sup>

[그림 II-1] 소비지출액의 누적도수 분포도



(최고치-최저치) × 0.001 → 54% 누적도수  
 (최고치-최저치) × 0.052 → 90% 누적도수  
 최고치 22,744,790원, 최저치 86,350원, 누적도수 34,240명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4, 4/4-1995, 3/4)』 원데이터

주석 1) 소비지출에 대한 1,000분위 누적도수표를 [부록에서 참조.

#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概要

## 1.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정의

## 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의 구조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이하 최임생계비라 함)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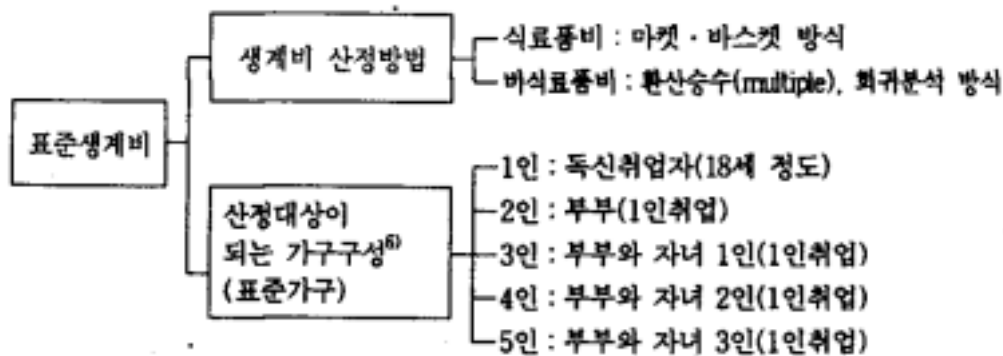
각 생계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Ⅱ-1>에 수록되어 있는데, 표준생계비 산정은 ① 식료품 ② 주거 ③ 광열·수도 ④ 가구·집기 ⑤ 피복·신발 ⑥ 보건·의료 ⑦ 교육·교양 ⑧ 교통·통신 ⑨ 기타 소비지출 및 ⑩ 비소비지출의 10개를 기본단위로 한다.

<표Ⅱ-1>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생계비	소비지출	식료품	2,600Kcal 기준(1995년에 개정됨)
		주거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기타 주거비(전세 및 자가평가액)
		광열·수도	전기료, 연료비, 수도료
		가구·집기, 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가사 서비스
		피복·신발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기타 피복, 신발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교양오락	교육, 문방구, 교양오락
		교통·통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기타	담배, 잡비,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비소비지출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타	쓰레기봉투(오물세)		

그런데 가구구성의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에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생계비 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표준적인 가구선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중 1인만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수별로 생계비를 산정한다.

[그림 Ⅱ-2] 표준생계비와 가구구성



주: 『근로자표준생계비』, 1997. 8쪽, 29쪽 참조

자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주석 6)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가구인원에 대응하는 가구주의 연령을 계산하고 있다.

가구원수	연령범위	평균연령
2인	28.2 ~ 29.4	28.8
3인	29.4 ~ 31.7	30.6
4인	31.7 ~ 33.9	32.8
5인	33.9 ~ 47.4	40.7

주: 가구인원 5인의 연령범위의 상한은 第1자가 18세인 가구주의 연령 47.4세로 함.

- 1인가구의 연령은 18세로 가정. 1인가구의 평균연령으로 18세와 28.2의 중간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구한 1인가구의 생계비는 독신가구의 형성과 동시에 필요한 생계비로 보기 때문이다.

- 여기서 표준가구를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더욱이 자녀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를 한정하였으므로 第1자가 고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5인표준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

### 3. 최저임금생계비 산정개요

이러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은 식료품비는 일정한 영양섭취열량(칼로리)을 기초로 '마켓·바스켓'을 작성하여<sup>1)</sup> 구하고 비식료품비는 도시가계조사상의 실태생계비(가구조사)의 최빈값을 활용, 회귀분석 및 환산승수(multiple) 방식에 의하여 구한다.

1)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인원수별 회귀분석으로 1인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 추정. 이때 최빈값을 이용하여 조정된 비용이 비목별 종속변수임. 최빈계층에 대해서만 샘플로 취함.

$$Y = a \times n^2 + b \times n + e;$$

n: 가구원수, e: 에러항

자료는 도시가계(통계청)

1994. 4/4 ~ 1995. 3/4를 1995년 자료로 사용.

1995. 4/4 ~ 1996. 3/4를 1996년 자료로 사용.

1996. 4/4 ~ 1997. 3/4를 1997년 자료로 사용.

- 2) 식료품비는 국민영양권장량(1997년 기준)을 기준으로 『유통물가통계』와 『종합물가정보』 등 민간물가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마켓-바스켓 방식
- 3) 비소비지출 항목은 법령상 실무담액으로 산정된다.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조건표를 이용하여 구함 → 실제 비소비지출(1990년 노·사간 합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각 비목별 2~6인가구 최빈값을 구한다.
- 2)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Y_i = a_i n^2 + b_i n + e_i$ 을 이용하여 각 비목별 1인취업 2~5인가족 및 1인가구소비액을 추정한다(대상 2~6인가구, 최빈값계층).
- 3) 각 비목별 추정된 값을 각 비목별 1인취업 4인가구 평균소비액으로 나눈 값이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이때 분자는 각 비목별 최빈값, 분모는 4인가족 평균소비액
- 4) 비식료품비는 환산승수에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소비액 환산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1~5인 가족의 비식료품비 계산

이때,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소비액 환산치'(Y<sub>i</sub>)란 '전체가구 평균소비액'(Y<sub>a</sub>)을 기준으로 회귀방정식상의 X=4일 때의 Y값(Y<sub>4</sub>)과 X=평균가구원수일 때의 Y값(Y<sub>n</sub>)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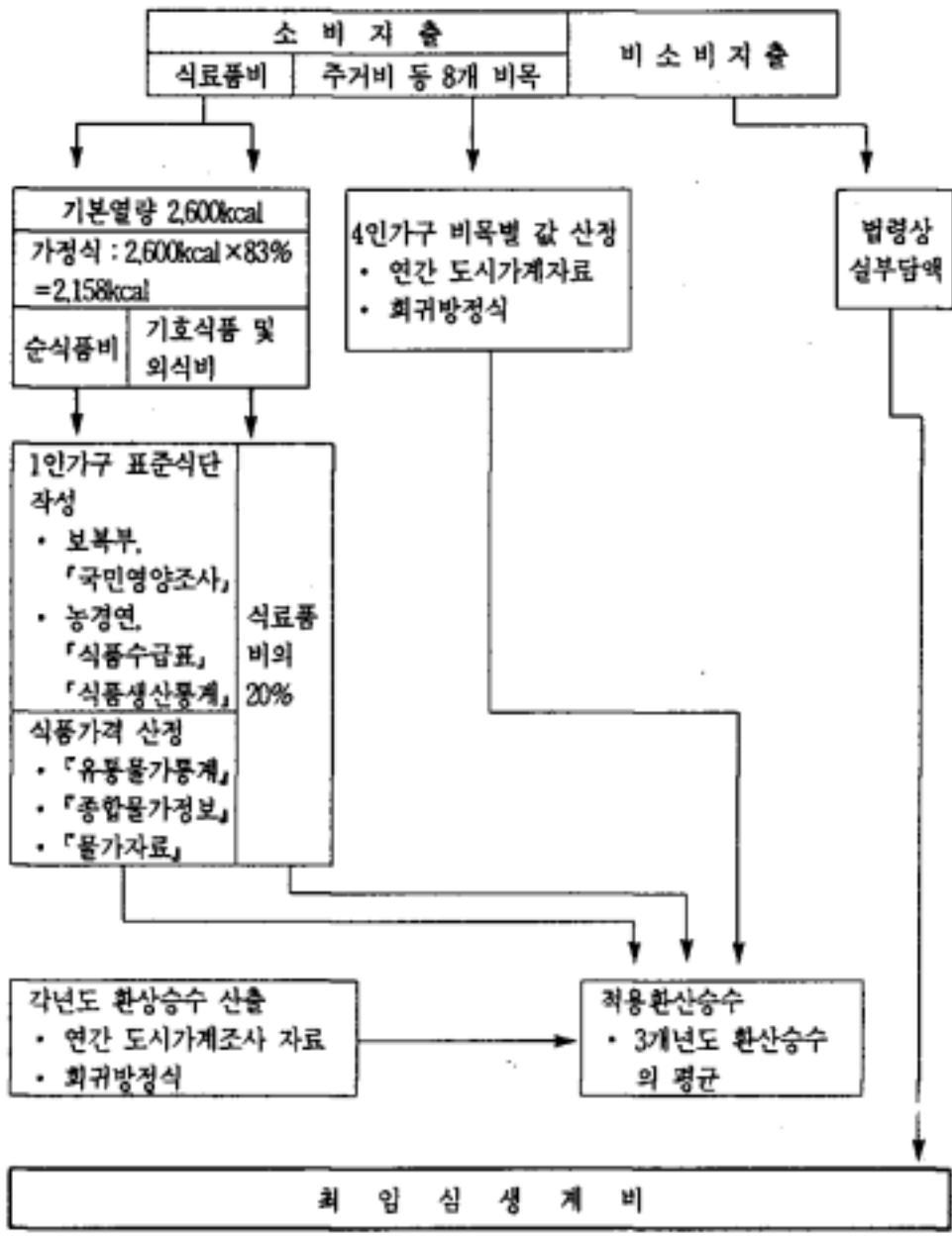
$$\text{즉, } Y_i = Y_a \times (Y_4 / Y_n)$$

식료품비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영양권장량(1인의 권장영양칼로리 2600Kcal)을 이용한 18세 성인남자의 1일 식단구성은 식품위생연구원 김초일 박사가 만든 자료에 기초함. 구체적으로는 18세 성인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열량은 2,600kcal인데, 1994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식사의 17%가 가정식이 아니므로 그 83%만을 충당하면 된다는 가정 아래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조사」,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그리고 「식품생산통계」를 이용하여 2,158Kcal를 위한 식품구성을 작성한다. 한편 식료품비 가운데 기호식품 및 외식비는 도시가계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 20%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 2) 실제로 계산되는 식료품비는 83%이므로 20%의 외식비를 추가함에 따라 8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한다.
- 3)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 『종합물가정보』, 『유통물가통계』, 『물가자료』 등의 민간물가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 1일 식료품비를 계산한 후 월간비용을 30.4일을 곱해서 계산해 냄.
- 4) 1인가구 월식료품비를 도시가계에서 구한 환산승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2~5인가족의 식료품비를 계산해 냄.

이상에서 설명한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은 [그림 II-3]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II-3]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주석 1) 마켓·바스켓(market basket)이란 어떤 일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비재 및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물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 Ⅲ. 生計費 算定過程

#### 1. 소비지출

소비지출관련 표준생계비 비목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나누어지는데 식료품비는 '마켓-바스켓' 방식에 의한 1인가구의 식료품비가, 비식료품관련 각 비목(주거비 등 8개 비목)은 회귀방정식 추정에 의한 4인가구의 비식료품관련 비목의 값이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비관련 각 비목의 값을 기초로 각 비목별 가구간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최임심생계비 구성 비목값이 산정된다. 우선 환산승수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계산하기로 하자.

#### 가. 환산승수

##### 1) 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관계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의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 i \text{ 비목 최빈값 추정치}}{\text{4인가구 } i \text{ 비목 평균지출액}} \dots\dots\dots (\text{식 1})$$

로 정의된다.

이러한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사용한다.<sup>1)</sup>

##### 2) 4인가구 비목별 평균지출액 산정

1988년도의 최임심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1997년도(1996. 4/4~1997. 3/4)<sup>2)</sup>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소비지출의 구성비목 중 주거비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즉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상에 나타나는 주거비는 순수히 현금의 지출과 관계되는 월세와 그 외의 주택수리비용 등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회비용 개념인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의 개념과 관련해 생각할 때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아 이후로는 두 개의 범주를 모두 계산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sup>3)</sup> 이와 같이 4인가구를 포함한 2~9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의 계산결과는 <표Ⅲ-1>에 나타나 있다.

<표 Ⅲ-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단위 : 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비지출계 <sup>1)</sup>	1,118,817	1,295,028	1,513,981	1,621,959	1,744,733	1,800,738	1,456,411	2,268,625
식료품 <sup>1)</sup>	300,362	376,720	440,875	487,552	529,468	482,870	279,921	894,364
주거비	56,260	52,293	52,523	46,955	40,733	26,957	107,750	5,317
광열·수도	54,876	62,020	68,737	80,225	113,297	97,136	54,430	168,409
가구·집기	59,640	71,807	61,524	71,170	27,444	110,750	51,528	144,260
피복·신발	88,579	112,121	126,505	120,183	123,652	181,937	110,307	190,479
보건·의료	71,046	62,252	71,099	89,518	125,159	80,870	26,505	91,608
교육·교양	69,699	129,134	263,486	286,518	282,643	310,248	207,037	268,837
교통·통신	166,794	154,270	180,824	151,116	205,933	160,783	210,770	163,040
기타 소비	251,561	274,411	248,408	288,722	296,404	349,187	408,163	342,311
소비지출계 <sup>2)</sup>	1,359,161	1,555,404	1,810,546	2,061,119	2,139,797	2,196,108	1,897,772	2,663,615
주거비 <sup>2)</sup>	296,604	312,669	349,088	486,115	435,797	422,327	549,111	400,307

주 : 1)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2)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한 수치임.

### 3)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다음으로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로 하자. 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가) 제1단계 :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1997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연평균을 사용하여 우선 각 가구별 log를 붙인 소비지출 총액을 평균( $\mu$ )과 분산( $\sigma^2$ )을 계산하여 최빈값( $m$ )을 구한다.<sup>4)</sup>

- 최빈값(mode) 산정

mode =  $e^{(\mu - \sigma^2)}$  (참고 : lognormal distribution을  $dF/dx=0$ 하면 구해짐).

$$f(x; \mu, \sigma^2)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frac{df(x; \mu, \sigma^2)}{dx} = -\frac{1}{x^2\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cdot \left(-\frac{1}{2\sigma^2}\right) \times (2)x$$

$$(\log_e x - \mu) \cdot \frac{1}{x} = \frac{1}{x^2\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left[-1 + \left(-\frac{1}{\sigma^2}\right)(\log_e x - \mu)\right] = 0$$

따라서  $-\frac{1}{\sigma^2}(\log_e x - \mu) = 1$  이고

$\log_e x - \mu = -\sigma^2$  이며,

$\log_e x = \mu - \sigma^2$  이므로,

$x = e^{\mu - \sigma^2}$  에서 최빈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m_j = e^{(u - \sigma^2)} \dots \dots \dots \text{(식 2)}$$

여기에서  $m$  =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

$u$  =  $\log$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

$\sigma^2$  =  $\log$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

$j$  = 해당가구(2인, 3인, 4인, 5인)

여기에서  $\bar{u}$  = 최빈값 계층의 구간은  $m \pm \frac{1}{2} \sigma$  로 설정되는데  $\sigma^2$ 가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이므로  $\sigma$ 는 소비지출 총액의 표준편차이다.<sup>5)</sup>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 $m$ )과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 $\bar{u}$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가구별 조정계수가 필요한 바, 조정계수는

$$\frac{m_j}{u_j} \dots \dots \dots \text{(식 3)}$$

여기에서  $\bar{u}$  =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최빈값 계층의 가구·비목별값에 해당가구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이다. [그림 II-2] 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총액 및 각 비목금액은 표준가구 전체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표 III-2>는 표준가구 전체와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총액을 각 가구별로 비교하고 있다.

<표 III-2> 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소비지출액 비교

(단위: 원)

	표준가구 전체(A)	최빈값계층 가구(B)	B/A
2인	1,518,607	1,037,237	0.68
3인	1,746,916	1,245,166	0.71
4인	2,025,184	1,458,913	0.72
5인	2,311,201	1,664,435	0.72
6인	2,394,184	1,537,216	0.64
7인	2,429,738	1,586,013	0.65
8인	1,897,439	1,895,358	1.00
9인	1,901,695	1,347,809	0.71

나) 제2단계 :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구한 2~6인 최빈값 계층 자료를 이용하여 각 비목별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해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회귀방정식은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한

$$Y_i = a_i n^2 + b_i n + e_i \quad (a_i < 0, b_i > 0 \text{로 기대됨}) \dots\dots\dots (\text{식 4})$$

여기에서 Y=비목별 지출액

n=가구원수

i=해당비목

e=오차항

로 정의된다.<sup>6)</sup>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와 계수추정치가 <표 III-3>에 수록되어 있다.<sup>7)</sup>

<표 III-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a	b	R <sup>2</sup>
소비지출	-45,650	526,534	0.93
식료품	-10,248	125,171	0.87
주거비	-15,253	125,418	0.50
광열·수도	-1,771	22,993	0.61
가구·집기	-1,396	14,060	0.21
피복·신발	-2,974	30,112	0.41
보건·의료	-1,732	19,632	0.24
교육·교양	4,914	13,895	0.53
교통·통신	-4,665	42,455	0.57
기타 소비	-7,743	75,413	0.66

주: 모든 변수의 t값은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제3단계: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산정  
 전 단계에서 구한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구한 결과가 다음 <표 III-4>에 나타나 있다.

#### 4) 환산승수의 산출

앞에서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 i \text{ 비목 최빈값 추정치}}{\text{4인가구 } i \text{ 비목 평균지출액}}$$

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표 III-1>에 계산되어 있으며,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표 III-4>에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환산승수를 계산할 수 있다.

<표 III-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480,884	870,468	1,168,752	1,375,736	1,491,420	1,518,804
식료품	114,923	209,350	283,281	336,716	369,655	382,098
주거비	110,165	189,824	238,977	257,624	245,765	203,400
광열·수도	21,222	38,902	53,040	63,636	70,690	74,202
가구·집기	12,664	22,536	29,616	33,904	35,400	34,104
피복·신발	27,138	48,328	63,570	72,864	76,210	73,608
보건·의료	17,900	32,336	43,308	50,816	54,860	55,400
교육·교양	18,809	47,446	85,911	134,204	192,325	260,274
교통·통신	37,790	66,250	85,380	95,180	95,650	86,790
기타 소비	67,670	119,854	156,552	177,764	183,490	173,730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2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는 2인가구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 209,350원을 4인가구 식료품비 평균지출액 440,875원으로 나눈 0.47이 된다.  
 이와 같이 환산승수 정의에 따라 구한 각 가구·비목별 환산승수의 값은 <표 III-5>에 나타나 있다.

<표 III-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0.32	0.57	0.77	0.91	0.99	1.00
식료품	0.26	0.47	0.64	0.76	0.84	0.87
주거비	0.32	0.54	0.68	0.74	0.70	0.58
광열·수도	0.31	0.57	0.77	0.93	1.03	1.08
가구·집기	0.21	0.37	0.48	0.55	0.58	0.55
피복·신발	0.21	0.38	0.50	0.58	0.60	0.58
보건·의료	0.25	0.45	0.61	0.71	0.77	0.78
교육·교양	0.07	0.18	0.33	0.51	0.73	0.99
교통·통신	0.21	0.37	0.47	0.53	0.53	0.48
기타 소비	0.27	0.48	0.63	0.72	0.74	0.70

같은 방법으로 1995년 기준 및 1996년 기준 환산승수를 구할 수 있다. 각년도의 환산승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에 적용하는 환산승수는 최근 3개년의 환산승수를 평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적용환산승수(1995~97년도 3개년 평균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0.31	0.57	0.76	0.91	0.99	1.01
식료품	0.27	0.48	0.66	0.79	0.87	0.90
주거비	0.26	0.46	0.60	0.70	0.73	0.71
광열·수도	0.30	0.56	0.76	0.92	1.03	1.09
가구·집기	0.19	0.33	0.44	0.50	0.52	0.50
피복·신발	0.23	0.41	0.54	0.62	0.65	0.63
보건·의료	0.27	0.48	0.63	0.71	0.75	0.72
교육·교양	0.07	0.17	0.32	0.49	0.70	0.95
교통·통신	0.19	0.34	0.44	0.50	0.52	0.49
기타 소비	0.26	0.46	0.61	0.69	0.72	0.68

나. 1인가구 식료품비<sup>8)</sup>

1) 기본방향

식료품비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식료품비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국민의 식생활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식료품비의 산정은 소비자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식료품비의 기본은 예전과 같이 중등활동에 종사하는 18세 성인남자 근로자(표준생계비의 기본단위가 18세 단신근로자임)로

하였고, 식료품비 산정을 위한 기본 영양소는 에너지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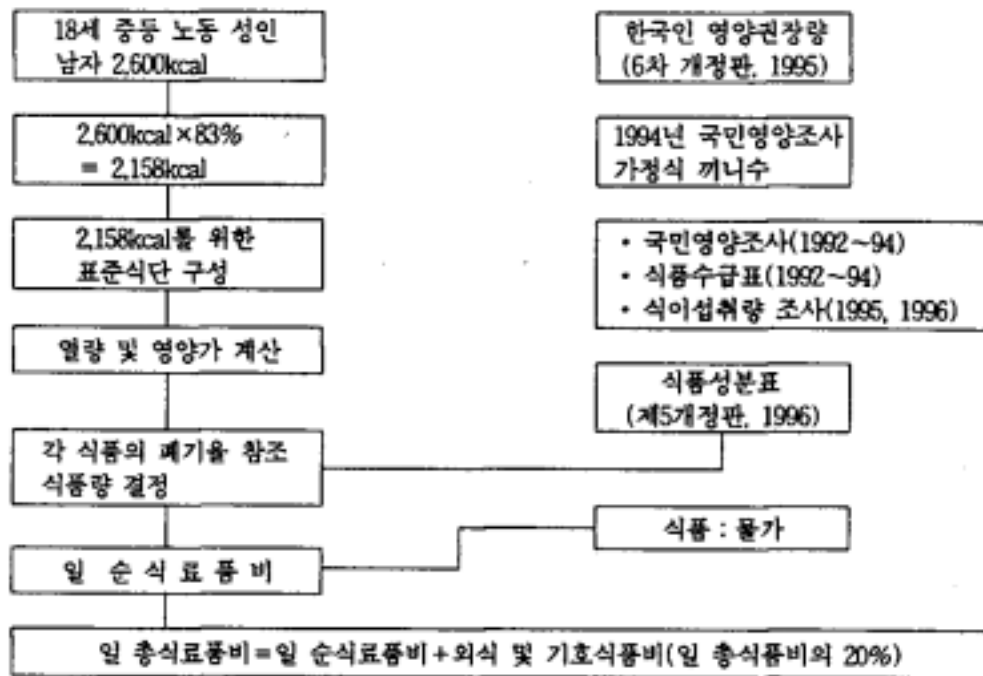
## 2) 식료품비의 산출방법

[그림 III-1] 은 식료품비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진다.

### 가) 제1단계

우선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18세 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열량 2,600kcal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1994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총식사 중 17% 이상이 가정식이 아닌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권장량의 83%인 2,158kcal를 중심으로 한다. 영양권장량의 개념은 97% 이상의 대상을 만족시키는 에너지량이므로 예전과 같이 따로 여유분을 둘 필요는 없다(표 III-7 참조).

[그림 III-1] 식료품비 산정방법



<표 III-7> 국민영양보고서에 의한 총섭취 끼니수 중의 외식빈도 및 비율

(단위 : 회, %)

	1992	1993	1994
총 끼니수	45,270(100.0)	40,313(100.0)	39,491(100.0)
가정외 식사횟수	5,750(12.7)	6,468(16.0)	6,743(17.1)
학  교	350( 0.8)	466( 1.2)	467( 1.2)
직  장	1,343( 3.0)	1,726( 4.3)	1,566( 4.0)
매  식	4,057( 9.0)	4,276(10.6)	4,710(11.9)

### 나) 제2단계

2,158kcal를 구성하기 위한 식품종류는 한국영양학회에 2,600kcal를 기준으로 한 권장량 권장모형을 식품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표 III-8 참조).

국민영양조사, 식품수급표, 대도시지역 성인의 식이섭취량조사 및 중소도시지역 성인 남녀의 식이섭취량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식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 각 식품의 선택은 식품수급표에서 가장 공급이 많은 것을 선택하였으며,
- 국민영양조사의 경우 섭취량은 기본으로 하였으나, 매년 11월에 조사되어 일부 섭취량의 경우 그 총섭취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수급표의 종류와 양 등을 반영하였다.

<표 III-8> 식품군별 1인 1일 권장·공급 및 섭취량 비교

			1995 영양권장량	1994 식품공급량	1994 국민영양조사	1995 대도시 성인	1996 중소도시 성인
곡		류	400~450	477	310	330	324
감	자	류	60~70	33	19	35	18
당		류	12	48	4	6	7
두		류	40	31	34	32	44
종	실	류	-	9	6	12	3
채	소	류	300~350	385	276	264	264
버	섯	류			3	5	5
과	일	류	200	96	122	211	172
육		류	120~140	82	56	93	85
어	패	류		89	83	80	89
해	조	류	-	34	8	5	6
난		류	50	23	20	30	20
유		류	200	90	66	100	50
유	지	류	10~15	38	8	10	11
음	료	류		202	19	132	70
조	미	류		-	35	31	34
기		타	-	-	1	7	6

주: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영양연구부 수행 연구결과임.

- 식품수급량이나 섭취량이 적더라도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비율을 결정하였고,
- 건강의 측면에서 권장되는 식품은 수급량의 비율보다 초과되게 설정하였다. 또한
- 식품수급표의 경우 가공식품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공식품의 양을 생산통계 등을 참조하여 수록하였다.
- 식품수급표의 총제공열량은 3년 평균으로 2,911kcal이다. 따라서 2,158kcal은 74.1%에 해당되므로 식품수급량을 74% 정도의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감안하였다(표 III-9 참조).
- 국민영양조사의 경우 총섭취열량의 3년 평균이 1,831kcal이므로 이의 117.9%에 해당되는 2,158kcal를 공급하기 위해 섭취량을 참조하였다.
- 성인의 식사구성의 경우, 2,500kcal의 권장모형이므로 권장식품의 양을 13% 정도 감소하여 참조하였으며, 실제 소비형태와 식사구성 예를 비교·검토하여 식품의 양을 결정하였다.
- 각 식품의 양은 소비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5g단위로 작성하였다.

<표 III-9> 국민 1인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단위 : kcal)				
	1992	1993	1994	평 균
에너지 공급량 (식품수급표)	2,912	2,872	2,960	2,911
에너지 섭취량 (국민영양조사)	1,875	1,848	1,770	1,831

다) 제3단계

각 식품의 양이 결정된 후 식품성분표의 영양가에 의거하여 영양소별 영양가를 계산하였고, 영양소가 영양권장량에 충분한가를 확인한 다음, 각 식품의 양을 위의 원칙에 의해 조정하였다. 영양가를 계산한 후 식품분석표에 있는 폐기율을 계산하여 실제 필요한 식품의 총중량, 즉 구입량을 계산하였다.

라) 제4단계

총중량의 가격은 민간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의 『유통물가통계』와 한국물가협회의 『월간물가자료』를 참조하였다. 1991년 이후 「도시가계조사」에서 18세 연령층이 속하는 24세 미만의 외식비 및 기호식품비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렇게 계산된 순식품비는 총식품비의 80%로 하며, 나머지 20%는 외식비와 기호식품비로 계산하였다.<sup>9)</sup>

<표 III-10> 순식품비를 위한 식료품 명세(1인 18세 근로자, 1일)

식품명	가식부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생육소 (g)	칼슘 (mg)	철분 (mg)	VA (R.E.)	VB1 (mg)	VB2 (mg)	나이아신 (mg)	VC (mg)	구입량 (g)	97.12 기준소비 과 가격	96.12 가격
외고개(한우, 등심)	15	30	3.2	2.1	0.0	0.0	1.7	0.4	1.8	0.01	0.03	0.9	0.2	15	263.1	268.2
돼지고기(등심)	30	71	6.3	4.9	0.1	0.0	2.1	0.5	1.5	0.17	0.05	1.7	0.6	30	210.6	196
닭고기(가슴)	10	24	2.9	1.6	0.0	0.0	1.0	0.0	5.1	0.01	0.01	0.7	0.1	13	34.8	33
햄, 소시지(햄도그)	5	14	0.6	1.1	0.3	0.0	0.8	0.1	0.0	0.01	0.00	0.1	0.5	5	38.6	36.7
내장 물(곰탕)	5	7	0.5	0.6	0.0	0.0	0.6	0.1	0.8	0.00	0.01	0.1	0.0	5	19.0	19.3
육류	65	149	12.6	10.2	0.4	0.0	6.2	1.1	9.2	0.20	0.10	3.5	1.4		557.2	534.2
물오징어	15	14	2.9	0.2	0.0	0.0	1.8	0.1	0.3	0.01	0.01	0.4	0.0	20	92.5	92.8
조기(생것)	5	8	1.0	0.4	0.0	0.0	2.7	0.1	1.1	0.00	0.01	0.3	0.1	10	227.3	37
명태(생것)	15	12	2.6	0.1	0.0	0.0	16.4	0.2	2.6	0.01	0.02	0.3	0.0	30	132.6	148.2
고등어(생것)	30	38	2.0	1.0	0.0	0.0	2.5	0.2	2.3	0.02	0.05	0.8	0.1	17	68.0	116.2
감치(생것)	5	7	0.9	0.4	0.0	0.0	2.3	0.1	1.0	0.01	0.01	0.1	0.1	8	72.0	73.3
참다랑어(통조림)	5	12	1.0	0.8	0.0	0.0	0.3	0.1	0.0	0.00	0.00	0.5	0.0	5	30.5	34.2
건달치(중)	30	23	3.9	0.5	0.5	0.0	129.0	1.6	0.0	0.01	0.01	0.2	0.0	10	213.3	233.3
어묵(계맛살)	10	11	1.1	0.1	1.5	0.0	21.8	0.1	0.0	0.00	0.00	0.1	0.0	10	45.0	66.7
어패류	75	96	15.4	3.5	2.0	0.0	178.9	2.5	7.3	0.06	0.12	1.7	0.3		441.2	801.7
달걀	25	40	3.1	2.7	0.2	0.0	9.8	0.5	39.8	0.02	0.11	0.0	0.0	30	85.0	85.9
난류	25	40	3.1	2.7	0.2	0.0	9.8	0.5	39.8	0.02	0.11	0.0	0.0		85.0	85.9
두부	50	40	4.2	1.8	1.5	0.1	79.5	1.3	0.0	0.03	0.02	0.4	0.0	50	48.6	27.8
콩류	10	40	3.6	1.8	2.6	0.5	24.5	0.7	0.0	0.05	0.03	0.2	0.0	10	31.4	34.6
콩(대두탈린것 기준)	1	3	0.2	0.0	0.6	0.0	0.8	0.1	0.0	0.01	0.00	0.0	0.0	1	4.1	4.7
두류	60	83	8.0	3.6	4.7	0.6	104.8	2.1	0.0	0.08	0.05	0.6	0.0		84.1	67.1
고추장	5	12	0.3	0.1	2.2	0.1	2.8	0.1	19.5	0.01	0.01	0.1	0.0	5	24	29
간장	8	4	0.6	0.0	0.4	0.0	3.1	0.2	0.0	0.00	0.01	0.1	0.0	8	11.6	11.6
된장	8	13	1.1	0.7	0.6	0.3	6.7	0.2	0.0	0.00	0.01	0.1	0.0	8	14.4	13.6
소금	4	0	0.0	0.0	0.0	0.0	1.6	0.0	0.0	0.00	0.00	0.0	0.0	4	2.7	2
조미료류	25	28	2.9	0.8	3.2	0.4	14.2	0.5	19.5	0.01	0.03	0.3	0.0		52.7	56.2
계(흰계, 볶은것)	3	17	0.8	1.6	0.5	0.2	34.5	0.3	0.0	0.02	0.01	0.2	0.0	3	47.1	44.7
닭	2	3	0.1	0.6	0.7	0.0	0.6	0.0	0.2	0.01	0.00	0.0	0.2	3	7.2	9.3
말랑, 볶은것	2	11	0.5	1.0	0.4	0.1	1.0	0.1	0.0	0.01	0.00	0.3	0.0	2	9.6	9.6
준싹류 및 전채류	7	31	1.2	2.6	1.6	0.3	36.1	0.4	0.2	0.04	0.01	0.5	0.2		63.9	63.6
소 계	258	426	42.3	23.4	13.1	1.3	350.9	7.1	76.0	0.42	0.42	4.6	1.9		1,684.0	1,608.7



식 품 명	가식부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섬유소 (g)	칼슘 (mg)	철분 (mg)	VA (RE)	VB1 (mg)	VB2 (mg)	나이아신 (mg)	VC (mg)	구입량 (g)	표고 기준소의 가치	표고 가치
배추김치	80	14	1.5	0.4	2.1	1.0	37.6	0.6	38.4	0.05	0.05	0.6	11.2	80	448.0	288
박두기	30	10	0.5	0.1	2.0	0.2	11.1	0.1	11.4	0.04	0.02	0.2	5.7	30	158.0	130
콩나물	30	10	1.6	0.4	0.8	0.2	7.8	0.2	0.0	0.04	0.03	0.2	3.9	30	32.8	31.6
양파	25	9	0.1	0.0	2.0	0.1	4.0	0.1	0.0	0.01	0.01	0.0	2.0	28	30.8	30.2
호박(과지호박)	10	3	0.1	0.0	0.7	0.0	6.1	0.2	34.0	0.01	0.01	0.1	4.0	10	18.4	24
파(대파)	15	4	0.2	0.0	0.8	0.2	12.2	0.2	19.4	0.01	0.01	0.1	3.2	19	30.0	25.8
오이	10	1	0.6	0.0	0.2	0.1	2.4	0.0	2.1	0.01	0.00	0.0	1.1	11	34.9	36.6
상치	5	1	0.1	0.0	0.2	0.0	2.8	0.0	18.3	0.00	0.00	0.0	1.0	5	9.7	14.5
당근	10	3	0.1	0.0	0.8	0.1	4.0	0.1	127.0	0.01	0.01	0.1	0.8	12	16.8	16.3
시금치	15	4	0.4	0.1	0.7	0.1	6.5	0.4	71.6	0.02	0.04	0.2	9.9	18	37.1	46.8
콩고추(계양종)	10	2	0.2	0.0	0.4	0.1	1.3	0.1	5.2	0.01	0.01	0.1	7.2	11	44.0	38.7
마늘	10	12	0.9	0.0	2.4	0.1	1.4	0.1	0.1	0.02	0.01	0.1	0.9	12	55.2	48
양배추	5	2	0.1	0.0	0.4	0.0	1.9	0.0	0.2	0.00	0.00	0.0	1.5	6	4.9	4.4
배추	10	1	0.1	0.0	0.2	0.1	5.1	0.0	0.9	0.01	0.01	0.0	4.6	11	7.4	5.95
부추생	15	3	0.3	0.0	0.5	0.2	37.4	0.5	55.2	0.01	0.02	0.1	11.3	19	36.1	25.3
부추	20	4	0.2	0.0	0.8	0.1	5.2	0.1	1.8	0.01	0.00	0.1	3.0	21	15.1	10.4
채소	300	83	6.8	1.8	15.0	2.8	146.8	2.7	365.4	0.26	0.23	1.9	71.3		971.2	782.6
과일류																
감자	35	28	0.5	0.1	6.5	0.2	1.1	0.6	0.0	0.06	0.01	0.4	6.3	38	51.7	50.9
고구마	15	19	0.2	0.0	4.5	0.1	3.6	0.1	2.9	0.01	0.01	0.1	3.8	17	25.8	28.6
서늘	50	47	0.7	0.1	11.0	0.3	4.7	0.7	2.9	0.07	0.02	0.5	10.1		77.5	79.5
느타리버섯	3	1	0.1	0.0	0.1	0.0	0.1	0.0	0.0	0.01	0.01	0.2	0.1	3	20.0	24
표고버섯(건)	1	3	0.2	0.0	0.6	0.1	0.2	0.0	0.0	0.06	0.02	0.2	0.0	1	13.7	6.7
양송이버섯(생것)	1	0	0.0	0.0	0.0	0.0	0.1	0.0	0.0	0.00	0.01	0.0	0.0	1	18.7	18.7
버섯류	5	4	0.3	0.0	0.7	0.0	0.4	0.0	0.0	0.06	0.04	0.4	0.1		41.3	48.4
미역(건)	5	10	1.0	0.1	0.2	0.0	48.0	0.5	27.8	0.01	0.05	0.2	0.9	5	62.5	75
다시마(건)	1	2	0.1	0.0	0.4	0.0	7.1	0.1	1.0	0.00	0.00	0.0	0.2	1	4.0	4.8
김	4	10	1.5	0.1	1.5	0.1	13.0	0.7	150.0	0.05	0.12	0.4	3.7	4	83.3	59.8
해조류	10	22	2.6	0.2	2.1	0.1	68.1	1.3	178.8	0.06	0.17	0.6	4.8		149.8	136.6
사과(후지)	45	26	0.1	0.0	6.9	0.2	1.4	0.1	1.4	0.00	0.00	0.0	1.8	55	132	132
배	5	2	0.0	0.0	0.6	0.0	0.2	0.0	0.0	0.00	0.00	0.0	0.2	7	25.2	27.7
감	5	2	0.0	0.0	0.6	0.1	0.4	0.0	1.2	0.00	0.00	0.0	2.5	7	11.7	17.5
포도(향황)	5	3	0.0	0.0	0.8	0.0	0.2	0.0	0.0	0.00	0.00	0.0	0.4	8	36.0	36
복숭아	5	2	0.0	0.0	0.4	0.0	0.2	0.0	0.1	0.00	0.00	0.0	0.4	6	36.0	12

굴	30	14	0.2	0.1	3.5	0.1	5.4	0.1	2.4	0.03	0.02	0.2	11.7	40	51.3	60	
수박	40	12	0.3	0.0	3.1	0.0	2.4	0.1	11.2	0.02	0.01	0.1	2.4	64	114.7	104	
참외	5	2	0.1	0.0	0.4	0.0	0.3	0.0	0.0	0.00	0.00	0.1	1.1	7	14.7	22.5	
과일류	140	23	0.7	0.1	16.3	0.4	10.5	0.3	16.3	0.05	0.03	0.4	20.5		40.6	41.7	
소 계	505	229	10.1	1.2	45.1	3.6	230.5	5.0	563.4	0.45	0.49	3.8	106.8		167.4	142.8	
곡류 및 전분류	쌀	300	1,044	19.5	3.3	228.6	0.6	15.0	1.5	0.0	0.42	0.06	3.9	0.0	300	538.5	542.3
	보리	5	17	0.5	0.1	3.8	0.0	1.9	0.1	0.0	0.01	0.00	0.2	0.0	5	5.2	5.9
	밀(식량 기준)	15	42	1.4	0.9	7.0	0.0	4.2	0.1	0.3	0.01	0.01	0.2	0.0	15	31.0	27.8
	귀수수	20	74	2.3	0.1	14.9	0.1	7.8	0.4	0.0	0.03	0.06	0.3	0.0	20	30.0	31.2
	라면	10	38	0.9	1.4	6.1	0.1	1.6	0.1	0.7	0.06	0.04	0.1	0.0	10	26.7	25
	밀가루	5	18	0.5	0.1	3.7	0.0	0.6	0.1	0.0	0.01	0.00	0.1	0.0	5	2.7	2.3
면	5	18	0.3	0.1	3.8	0.2	0.1	0.2	0.0	0.02	0.00	0.1	0.0	5	11.9	1.7	
소 계	360	1,251	25.4	6.0	267.9	1.0	31.2	2.5	1.0	0.56	0.17	4.9	0.0		645.0	651.3	
유류 및 유제품	우유	160	96	5.1	5.1	7.5	0.0	130.0	4.2	44.8	0.06	0.22	0.2	1.6	150	321.4	253.5
	해장요구르트	30	16	0.2	0.3	2.9	0.0	3.6	0.1	0.0	0.24	0.02	0.1	4.5	30	50.6	44.3
	아이스크림	5	11	0.2	0.7	1.0	0.0	6.1	0.0	7.6	0.00	0.01	0.0	0.0		22.7	14
	소 계	195	123	5.5	6.1	11.4	0.1	177.7	0.3	52.4	0.30	0.25	0.3	6.1		394.9	311.8
유지 및 단류	콩기름	5	41	0.0	5.0	0.0	0.0	0.0	0.0	0.00	0.00	0.0	0.0	5	11.1	8.5	
	참기름	2	38	0.0	2.0	0.0	0.0	0.0	0.0	0.00	0.00	0.0	0.0	2	52.3	50.7	
	옥수수기름	2	38	0.0	2.0	0.0	0.0	0.0	0.0	0.00	0.00	0.0	0.0	2	4.7	4.2	
	유지방	9	80	0.0	9.0	0.0	0.0	0.0	0.0	0.00	0.00	0.0	0.0		67.1	63.4	
	식당 탄산음료(콜라)	5	19	0.0	0.0	5.0	0.0	0.2	0.0	0.0	0.00	0.00	0.0	0.0	5	4.8	4
	달류	95	55	0.0	0.0	14.0	0.0	2.0	0.0	0.0	0.00	0.00	0.0	0.0		108.1	92.7
소 계	104	125	0.0	1.0	14.0	0.0	2.0	0.0	0.0	0.00	0.00	0.0	0.0		176.2	156.1	
총 계	1,422	2,164	83.3	45.7	261.5	5.9	791.4	14.9	692.8	1.73	1.33	17.6	114.8		4,572.5	4,190.8	
명당권장량(80%)		2,158	66.4				747.4	14.9	581.0	1.75	1.33	14.9	45.7				
비율		100.3	125.5	(119.1)			105.9	100.0	119.2	149.1	100.0	138.1	251.2				

주: 1) 소비자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의 평균임.

2) 콩류, 쌀, 고추장, 식당, 탄산음료 등은 한국농가정보사의 『종합농가정보』와 한국농기협회의 『집단농가자료』, 한국농용통계연구원의 『유종  
물가통계』를 참조하였음.

#### 다.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가구 환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각 비목별 전표본가구의 평균치(=A)와 평균가구원수를 구한다.

둘째, 1997년 도시가계조사 기준 1인만이 취업한 근로자가구를 표본으로 비식료품관련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추정된다.

$$Y_i = \hat{a}_i n^2 + \hat{b}_i n \dots\dots\dots (식 5)$$

여기에서 Y=비목값

n=가구원수

i=해당비목

비목별 (식 5)의 추정결과는 <표 III-11>에 수록되어 있다.

셋째, <표 III-11>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X)가 4인인 경우의 비목값(=Y<sub>a</sub>)과 평균가구원수인 경우의 비목값(=Y<sub>b</sub>)을 구하여 B=Y<sub>a</sub>÷Y<sub>b</sub>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각 비목별로 A×B, 즉 전표본가구 평균치에 B를 곱한 값이 4인 환산치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식료품비관련 4인 환산치가 <표 III-12>에 수록되어 있다.

<표 III-11>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sup>10)</sup>

	a	b	R <sup>2</sup>
소 비 지 출	-45,650	526,534	0.93
식 료 품	-10,248	125,171	0.87
주 거 비	-15,253	125,418	0.50
장 열 · 수 도	-1,771	22,993	0.61
가 구 · 집 기	-1,396	14,060	0.21
피 복 · 신 발	-2,974	30,112	0.41
보 건 · 의 료	-1,732	19,632	0.24
교 육 · 교 양	4,914	13,895	0.53
교 통 · 통 신	-4,665	42,455	0.57
기 타 소 비	-7,743	75,413	0.66

<표 III-12>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전세가구평균치(A)	4인가구 추정치(Y <sub>4</sub> )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Y <sub>g</sub> )	4인가구환산치 (A × Y <sub>4</sub> ÷ Y <sub>g</sub> )
주 거 비	345,757	257,624	252,959	352,133
장 열 · 수 도	66,788	63,636	59,277	71,700
가 구 · 집 기	64,572	33,904	32,308	67,761
피 복 · 신 발	115,861	72,864	69,392	121,658
보 건 · 의 료	71,534	50,816	47,845	75,976
교 육 · 교 양	196,831	134,204	111,118	237,725
교 통 · 통 신	168,578	95,180	91,898	174,598
기 타 소 비	261,731	177,764	170,077	273,560

라. 가구별 소비지출

이제 소비지출액을 가구별로 산출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거비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통계적 설명력도 높고 현실에도 적합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한 것만 산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비소비지출액 역시 같은 기준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식료품비

앞에서 구한 1인가구 식료품비를 토대로 하여 j가구 식료품비는

$$1\text{인가구 식료품비} \times 30.4 \times \frac{10}{8} \times \frac{j\text{가구 식료품비 적용 환산승수}}{1\text{인가구 식료품비 적용 환산승수}}$$

..... (식 6)

에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1인가구 식료품비는 2,600kcal의 80%를 환산한 가격을 의미하며, 30.4는 한 달 평균일수(365/12), 10/8은 외식비의 비중을 20%를 고려하기 위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가구별 식료품비가 <표 III-13>의 식료품비 값이다.

2) 비식료품비

비식료품관련 i비목 · j가구의 값은 4인가구 환산치에 i비목 · j가구 적용 환산승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표 III-13>에 비식료품관련 가구 · 비목별 값이 수록되어 있다.

<표 III-13> 가구별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56,199	827,178	1,124,790	1,338,352	1,475,952
식료품	160,825	290,722	396,876	470,103	519,588
주거비	91,555	161,981	211,280	246,493	257,057
광열·수도	21,510	40,152	54,492	65,964	73,851
가구·집기	12,875	22,361	29,815	33,881	35,236
패복·신발	27,981	49,880	65,695	75,428	79,078
보건·의료	20,514	36,468	47,865	53,943	56,982
교육·교양	16,641	40,413	76,072	116,485	166,407
교통·통신	33,174	59,363	76,823	87,299	90,791
기타 소비	71,126	125,838	166,872	188,756	196,963
열량계수	35.3	35.1	35.2	35.1	35.2

주석 1) 한국노총·한국경총·관계학자를 포함한 1차 간담회에서 연간자료 사용을 제안하였다(1995년 12월).

주석 2) 이용가능한 최근자료가 1997년 3/4분기까지이다.

주석 3)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할 경우 월세를 사는 가구의 주거비가 전세 또는 자가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석 4) 이는 최빈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의 분포가 log 정규분포 형태를 지닌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주석 5) 이러한 최빈값 계층구간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m \pm \frac{1}{2} a$$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는 대체로 1,000가구 이상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의 경우 이러한 최빈값 계층은 2인가구 205가구, 3인가구 385가구, 4인가구 538가구, 5인가구 142가구로 총 1,270가구이다.

주석 6) 회귀방정식을  $Y = an + b + e$  라는 1차식에 의해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가구원수가 0이면 소비지출도 0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액은 증가하나 그 증가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차식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1차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소비지출액이 負(-)의 부호를 갖는 경우가 나타났고  $R^2$ 도 상당히 낮았다. 한편 상수항을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R^2$ 값이 낮아 상수항을 넣지 않았다.

주석 7) 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7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각 비목별 평균값이 들쭉날쭉하여 회귀분석시 계수값이 실제치와 다르게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정되었다(표 III-1 참조).

주석 8) 1인가구 식료품비의 열량 및 식품구성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김초일 박사가 선정하였다.

주석 9)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복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되었다. 외식비용 40%로 하면 식품비가 너무 높다.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하였다.

주석 10) <표 III-3>과 같은 것인데, 편의상 다시 수록했다.

## 2. 비소비지출<sup>1)</sup>

비소비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1988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법령상 실무담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예전과 같이 이에 따랐다.

### 가. 조세

1990년 12월 31일부로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조세는 소득세, 주민세로만 구성된다.

#### 1) 소득세

소득세는 이전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적인 근로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총액을 평균저축률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였다.<sup>2)</sup>

<표 III-14> 1997년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단위 : %, 만원)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
4,000만원 이하	20	100
8,000만원 이하	30	500
8,000만원 초과	40	1,300

주 : 1996년 세법 개정에 의거.  
자료 : 국세청, 「간이소득세액표」, 1997.

#### 2) 주민세

소득세와 동일규정에 의해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조세액이 <표 III-15>에 수록되어 있다.

<표 III-15>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456,199	827,178	1,124,790	1,338,352	1,475,952
추정근로소득	570,248	1,033,973	1,405,987	1,672,940	1,844,940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계	18,847	47,196	71,877	96,549	111,032
조세액	0	13,035	23,748	41,550	48,377
소득세	0	1,185	2,159	3,777	4,398
주민세	0	11,850	21,589	37,772	43,979
사회보장분담금	18,847	34,161	48,129	54,999	62,655
의료보험	7,536	13,659	19,311	21,980	25,120
국민연금	9,600	17,400	24,600	28,000	32,000
고용보험료	1,711	3,102	4,218	5,019	5,535

### 나.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장분담금은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구성된다.

1)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료는 해당 표준보수월액(추정근로소득×0.85)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한 의료보험 등급표에서 구하였다.

해당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본인부담 비율 ..... (식 7)

로 계산된다. 해당 표준보수월액은 <표Ⅲ-16>에 수록되어 있다. 직장피보험자의 부담액은 의료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험액의 50%를 개인별부담으로 하였다. 보험료율은 조합 정관에 따라 지역·지구별로 달라지는데 본고는 1997년 12월말 현재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평균보험료율 3.14%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Ⅲ-16> 표준보수월액 조건표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
1		70,000
2	75,000 이상	80,000
3	85,000 이상	90,000
4	95,000 이상	100,000
5	105,000 이상	110,000
6	115,000 이상	120,000
7	125,000 이상	130,000
8	135,000 이상	140,000
9	145,000 이상	150,000
10	155,000 이상	160,000
11	165,000 이상	170,000
12	175,000 이상	180,000
13	185,000 이상	190,000
14	195,000 이상	200,000
15	205,000 이상	210,000
16	215,000 이상	220,000
17	225,000 이상	230,000
18	235,000 이상	240,000
19	245,000 이상	260,000
20	255,000 이상	270,000
21	280,000 이상	290,000
22	300,000 이상	310,000
23	320,000 이상	330,000
24	340,000 이상	350,000
25	360,000 이상	370,000
26	380,000 이상	390,000
27	400,000 이상	410,000
28	420,000 이상	430,000
29	440,000 이상	450,000
30	465,000 이상	480,000
31	495,000 이상	510,000
32	525,000 이상	540,000
33	555,000 이상	570,000
34	585,000 이상	600,000
35	615,000 이상	630,000
36	645,000 이상	660,000
37	675,000 이상	690,000
38	705,000 이상	720,000
39	745,000 이상	770,000
40	795,000 이상	820,000
41	845,000 이상	870,000
42	895,000 이상	920,000
43	945,000 이상	970,000
44	995,000 이상	1,020,000
45	1,055,000 이상	1,090,000
46	1,125,000 이상	1,160,000
47	1,195,000 이상	1,230,000
48	1,265,000 이상	1,300,000
49	1,350,000 이상	1,400,000
50	1,450,000 이상	1,500,000
51	1,550,000 이상	1,600,000
52	1,700,000 이상	1,800,000
53	1,900,000 이상	1,900,000

자료 : 의료보험업무편람 「표준보수월액 조건표(시행령 제81조)」, 1996.  
국민연금실무편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1996.

## 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을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국민연금부담액은

해당 표준보수월액×20/1000 ..... (식 8)

로 정의된다.

3) 고용보험료

임금총액(추정근로소득)×3/1000 ..... (식 9)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이 <표 III-15>에 수록되어 있다.

다. 기타 비소비지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기타 비소비(오물세)는 쓰레기 봉투가격에 포함되게 되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에서는 가정집 1인당 평균 쓰레기량을 1.37리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환경청에서 하루 총쓰레기량을 평균적으로 0.33kg으로 잡고 이를 무게/부피의 값인 0.24로 나눌 때 1.37리터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37리터를 각 가구인수와 이와 상응하는 쓰레기 봉투값을 곱할 때 각 가구당 오물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7> 오물세

	1인	2인	3인	4인	5인
오물세	617원	1,233원	1,850원	2,466원	3,038원

주 : 각 가구당 오물세비는 하루 평균 1.37리터×30일×15원(10리터 기준 1리터당 평균가격).

라. 가구별 비소비지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법령상 실제부담액으로 산정된 가구별 비소비지출액이 <표 III-18>에 나타나 있다. 최저임금수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총액은 19,463원이다.

<표 III-18>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 비 지 출	456,199	827,178	1,124,790	1,338,352	1,475,952
추정근로소득	570,248	1,033,973	1,405,987	1,672,940	1,844,940
비 소비 지 출	19,463	48,429	73,726	99,015	114,114
조세 및 사회보장	18,847	34,161	48,129	54,999	62,655
조 세 액	0	13,035	23,748	41,550	48,377
소 득 세	0	11,850	21,589	37,772	43,979
주 민 세	0	1,185	2,159	3,777	4,398
사회보장분담금	17,467	33,620	45,009	54,279	61,904
의 료 보 험	7,536	13,659	19,311	21,980	25,120
국 민 연 금	9,600	17,400	24,600	28,000	32,000
고 용 보 험 료	1,711	3,102	4,218	5,019	5,535
기 타 비 소비	617	1,233	1,850	2,466	3,083

주석 1) 저축에 관한 사항

-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 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하므로, 저축률을 20%로 계산하였다.



- 기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여태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다.
  -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이다.
  -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다 - 소비지출계의 50% 이상 수준이다(도시가계 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 주석 2)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저축률은 1993년 34.9%, 1994년 35%(잠정)로 나타나, 표준생계비 산출대상이 되는 최빈값 계층, 특히 18세 단신근로자가구의 경우 저축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기에 20%로 가정하여 환산하였다.

#### IV.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 1.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본 연구는 기존의 같은 연구(정인수 1996 참조)에서 사용한 방법을 주로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새로이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분기별 자료(2/4분기)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최빈계층의 계산시 분산의 자유도를 고려함으로써 노사합의에 따른 정확한 최빈계층구간을 사용하였다.

셋째, 환산승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 2. 1인가구 18세에 대한 연령조정(각국의 연령별 최저임금의 차이로 다시 쓸 것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987년 9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산정대상이 되는 표준가구는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최심위가 발족한 1987년의 초창기 내용으로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가구원수별 평균연령도 2인 이상은 28.8~40.7세로 되어 있으나 1인가구는 18세로 정해져 있다(표 IV-1 참조).

[그림 IV-1]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구성 (표준가구)	1인 : 독신취업자(18세 정도) 2인 : 부부(1인취업) 3인 : 부부와 자녀 1인(1인취업) 4인 : 부부와 자녀 2인(1인취업) 5인 : 부부와 자녀 3인(1인취업)
----------------------------	---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8쪽.

<표 IV-1> 가구원수별 평균연령

	1인	2인	3인	4인	5인
연령별위	18	28.2~29.4	29.4~31.7	31.7~33.9	33.9~47.4
평균연령	18	28.8	30.6	32.8	40.7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29쪽.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므로 1인가구는 여타 2인 이상 가구와는 연령과 혼인여부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최심생계비' 계산시 연령 및 단신이라는 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방법을 다시 생각하여 볼 때, 1인가구에 대한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원래 통계조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대상(독립변수)으로 회귀분석하여 1인가구에 대한 추정값을 계산해 내는 과정상 추정된 1인가구 생계비에는 2인 이상의 특성 - 혼인, 연령 -을 지니고 왔다고 유추된다. 그럴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연령평균이 그대로 1인가구에도 반영되고, 2인 이상 가구에서 대부분 혼인한 가구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생계비가 계산되어 나온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1인가구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생계비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조정된 값을 만들어야만 목표에 부합한 값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가 연구 및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귀분석시 가구원수만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지 말고 연령 및 혼인여부도 더미(dummy)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즉 연령의 구분은 통계청 자료에 있으나 결혼유무에 대한 변수는 통계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 실제적으로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혼유무도 연령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 평균소비액을 단신연령그룹인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액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법에 착안, 조정하였다. 연령조정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연령 평균은 1994~96년 3개년 평균한 값이 정확히 0.8이 나온다.

우선 1997년도의 경우 <표 III-13>의 소비지출과 <표 III-18>의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구별 생계비가 <표 IV-2>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최임심생계비 값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의 첫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하지 않은 수치이며, 두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생계비를 두번째 세로줄에 나타나는 연령조정을 한 값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최임심을 위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 1인가구 생계비 액수는 384,422원이 되며, 이는 전년도에 제시한 364,866원보다는 5.4% 상승한 값이다. 또한 지난번의 법정최저임금액 335,610원에 비해서는 14.5% 증가한 수치이다.

1인가구 생계비에 식료품의 경우에도 연령조정을 하는데 대하여 한국노총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식료품은 연령조정을 안한 경우의 값보다 식료품을 연령조정된 것을 택하는 이유는 전체소비에서 연령조정(0.8)값만 알 수 있으므로 식료품에는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과대계산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18세 단신근로자가 식비가 많이 든다면 다른 비목에서 소비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 연령조정값에 대한 논쟁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계속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가 이론생계비이기 때문에 실태생계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론에 대한 반대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식료품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표 IV-2> 가구원수별 생계비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56,199	364,959	827,178	1,124,790	1,338,352	1,475,952
식료품	160,825	128,660	291,993	397,608	472,159	521,860
주거비	91,555	73,244	161,981	211,280	246,493	257,057
광열·수도	21,510	17,208	40,152	54,492	65,964	73,851
가구·집기	12,875	10,300	22,361	29,815	33,881	35,236
피복·신발	27,981	22,385	49,880	65,695	75,428	79,078
보건·의료	20,514	16,411	36,468	47,865	53,943	56,982
교육·교양	16,641	13,313	40,413	76,072	116,485	166,407
교통·통신	33,174	26,539	59,363	76,823	87,299	90,791
기타 소비	71,126	56,900	125,838	166,872	188,756	196,963
비소비지출	19,463	19,463	48,429	73,726	99,015	114,114
조세액	0	0	13,035	23,748	41,550	48,377
사회보장	18,847	18,847	34,161	48,129	54,999	62,655
기타비소비	617	617	1,233	1,850	2,466	3,083
표준생계비	475,662	384,422	875,607	1,198,516	1,437,366	1,590,067

주: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 3. 생계비 추정에 대한 과제

본 절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생계비의 연령그룹별 조정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 절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외식비의 경우 식료품비 중 몇 %를 외식비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20%로 하였다. 이 점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나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저축을 생계비에 반영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저축을 넣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결정인가 하는 점과 만약 포함시킨다면 몇 % 정도가 소비지출 중 저축액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10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적용범위, 최저임금과 임금소득 불평등도, 빈곤과의 관계, 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앞으로 최저임금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제 V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V. 最低賃金制의 現況과 改善方向

본 장에서는 198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황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현 주소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고, 연령별로 차이를 두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외국 최저임금제의 이유와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변동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분석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제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용범위의 변경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변동이 임금소득불평등도나 빈곤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부록 2]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ILO협약을 수록하였다.

###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황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에 도입되었다. 당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그룹이 462.5원, 2그룹이 487.5원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었으며, 이듬해인 1989년에는 그룹별 차이를 두지 않은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이 광업과 건설업에도 확대적용되었고, 1990년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의 변경일이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전체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아래 1994년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시키고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그 적용기간을 바꾼 바 있다. 1997년 9월 1일부터 1998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85원이며,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11,880원, 월 226시간 기준으로는 335,610원이다.<sup>1)</sup> 또한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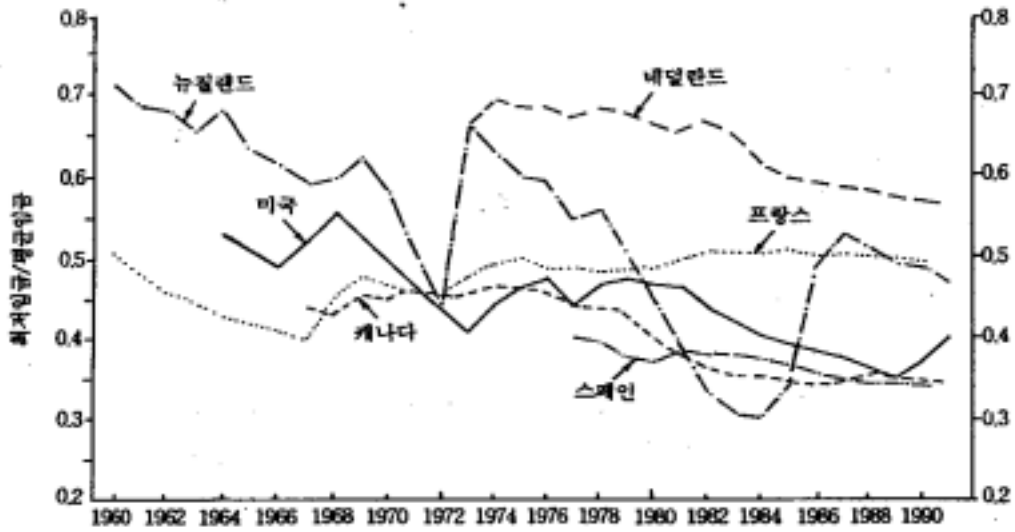
##### 1)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개념은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the 'bite' in minimum wage legislation)이다. 그러나 국제비교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나라마다 임금지급 기준방법과 임금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그 비교대상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 V-1] 을 통해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북아메리카와 스페인에서 비교적 낮은 반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비율이 안정적이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되어 왔다. 프랑스의 비율이 50%선에서 안정적인 이유는 프랑스는 물가를 최저임금에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의 추이는 평균임금 대 최저임금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캐나다는 큰 변화가 없으나 미국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9년까지 10년동안 약 25%의 최저임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몇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sup>2)</sup>

또한 영국에서는 1993년 보수당 정권시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바 있으나, 1996년의 노동당 정부가 최저임금제의 폐지가 고용의 창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빈곤한 근로자만을 양산한다는 학계와 노동계의 설득을 받아 최저임금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V-1]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의 추이



- 주 : 1) 미국 : 민간비농부문의 생산직 근로자 평균시간당 소득에 대한 연방시간당 최저임금 비율.  
 2) 프랑스 : 민간과 준민간부문 상업과 서비스 분야의 정규임금 또는 봉급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월최저임금 비율.  
 3) 캐나다 : 제조업의 평균시간당 소득에 대한 주별 시간당 최저임금의 가중평균 비율.  
 4) 스페인 : 개인총월평균소득에 대한 월최저소득 비율.  
 5) 네덜란드 : 육체노동자의 준거임금에 대한 연최저임금 비율.  
 6) 뉴질랜드 : 정상근로시간의 사용자 월평균임금에 월최저임금 비율.

자료 : OECD(1994: 48).

##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표 V-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평균 정액급여(총급여 <표 V-1> 평균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88	'89	'90	'91	'92	'93	'94.1~'94.8	'94.9~'95.8	'95.9~'96.8	'96.9~'97.8	평균
(1) 최저임금 (사급)	482.50	600	690	820	925	1,005	1,085	1,170	1,275	1,400	
(2) 최저임금 (일급)	3,700	4,800	5,520	6,560	7,400	8,040	8,680	9,360	10,200	11,200	
(3) 최저임금 (월환산금)	111,000	144,000	165,600	192,700	209,050	227,130	245,210	264,420	288,150	316,400	
(4) 매월노동 정액급여	316,047	374,969	443,829	521,992	596,586	670,093	746,800	787,000 <sup>1)</sup>	876,466 <sup>2)</sup>	968,670 <sup>3)</sup>	
(5) (3)/(4) × 100 (%)	35.1	38.4	37.3	36.9	35.6	33.9	32.8	33.6	32.9	32.9	35

주 : 1) 1994년과 1995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2) 1995년과 1996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3) 1996년과 1997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연감』, 1997. 12.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에서 시간외근로, 특별보너스를 제외한 급여)에 대한 월최저임금 비율은 30~40%정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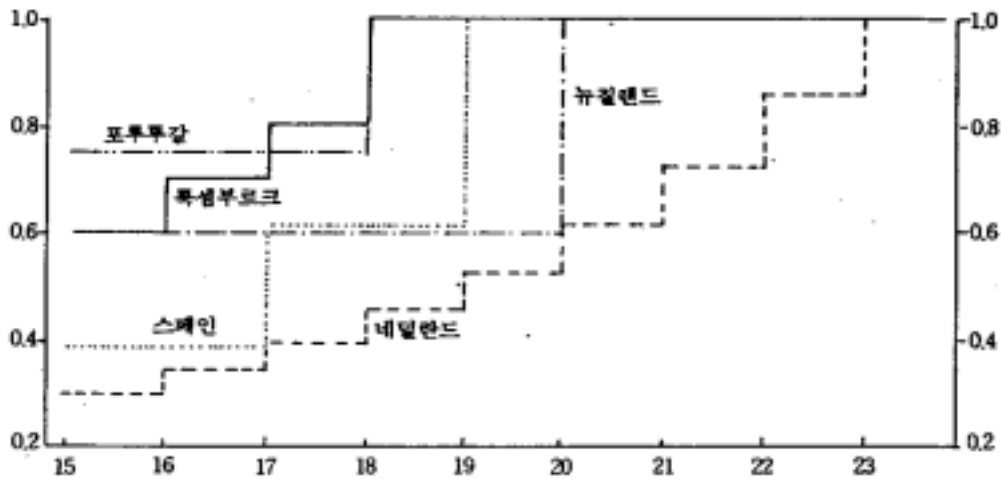
최근에 올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시간당 임금으로 이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1996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에 있어 전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6,829원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400원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5%이며, 이를 제조업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5,244원으로 26.7%이다.<sup>3)</sup>

#### 나. 연령별 최저임금제의 국가별 추이

[그림 V-2] 에서 보듯이 많은 나라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두는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15~22세 그룹을 특별한 최저임금 그룹으로 상정하여 장년층 최저임금의 30~9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은 장년층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한다. 18세 연령의 경우 네덜란드는 성인 최저임금의 45%,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약 60%,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약 80%의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는 연령별 차이를 두지 않는 나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청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정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실험적으로 청년층에 대하여 첫고용시 처음 반년 동안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준최저임금(subminimum wage)’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V-2] 연령별 법정최저임금의 국제비교(1990대 초)



자료 : OECD(1994: 47).

위에서처럼 외국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제의 연령별 차이의 이유는 저연령층 근로자의 상대적 생산성이 장년층의 생산성에 비하여 낮으며, 최저임금제의 상승이 장년층의 고용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청년층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석 1) 최저임금액의 변동추이 및 적용연도별 수혜근로자와 영향률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7) 또는 유경준 (1997) 참조.

주석 2) 이 표에 나타나는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4.25달러이다. 이후 1996년 6월에 4.7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1996년 6월에는 5.15달러로 다시 인상되었다. 그 이유는 물가를 고려한 최저임금액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점차 감소하게 됨에 따라(실질최저임금액은 1995년 기준으로 1968년에 6.45달러로 가장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9년에는 4.1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생계비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클린턴 정부에서 인상하였다. 참고로 미국은 193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16번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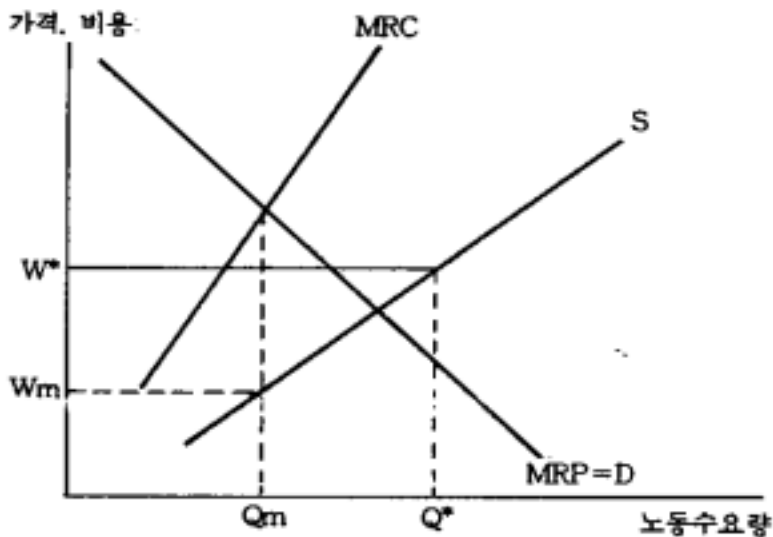
주석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 Tape를 이용하여 계산

## 2. 최저임금제와 실업과의 관계

### 가. 외국의 경우

일반경제학의 이론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유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수요독점적(monopsony)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즉 노동수요가 한 기업에 의해 독점이 되는 경우 [그림 V-3] 에서 보듯이 그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한계수입(MRP)과 한계비용(MRC)이 일치하는 점에서 노동의 수요량( $Q_m$ )을 정하고, 임금은 그 점과 노동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W_m$ )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로 임금이  $W_m$ 에서  $W^*$ 로 상승(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량은  $Q_m$ 에서  $Q^*$ 로 변하여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sup>1)</sup>

[그림 V-3] 수요독점과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여러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Card, 1992; Katz and Krueger, 1992; Card and Krueger, 1994; Dickens, Machin and Manning, 1994; Abowd, Kramaz and Lemieux, 1995). 그러나 위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력이 제대로 반영되기 이전으로 연구시점을 설정하였거나,<sup>2)</sup> 사용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반박하는 이론도 많다. 위의 반박내용은 Filer, Hamermesh and Rees(1996)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나 미국의 경우 경제학 대가들의 견해는 전자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즉 하버드대의 프리만(Richard Freeman) 교수나 노벨상 수상자인 MIT의 소로우(Robert Solow)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거나 적어도 1980년대 말에는 없다고 주장한다.<sup>3)</sup> 이러한 견해는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탄력성(own-wage elasticities)이 미숙련 노동자나 청년층 근로자에게는 매우 적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다른 문헌에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임금탄력성이 -0.1에서 -0.2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up>4)</sup>

또한 OECD의 연구결과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10%증가는 1~3%의 10대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20~24세는 그보다 작은 비율로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프랑스와 캐나다에 대한 연구결과도 위와 비슷한 내용(청년층고용의 임금탄력성은 -0.1~-0.23)을 보여주고 있다(Jobs Study, 1994).

따라서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록 다른 견해도 존재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장년층의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청년층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쳐 청년층의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목적은 시장임금이 생계비의 수준보다 낮아 시장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최저임금을 시장임금보다 높여 주어 저임금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sup>5)</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 있어 최저임금이 실업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여러 연구결과는 연구 당시의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낮은 상태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우하향하는 노동수요곡선으로 인하여 당연한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가에 의하여 시장임금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위에서 살펴본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둘째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그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이 1994년 이후 2%대로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1998년 현재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경야독을 하는 산업체 종사 학생들이 대다수로서 기업의 임금외 지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기본급을 상승시키면 초과근로수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노동비용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동반된다면 사실상 이들은 최저임금 수혜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근 몇해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올해의 경우도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자에게 일당으로 2만에서 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이 1일 8시간 근무시 11,880원임을 감안할 때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은 최저임금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이 나타난 이유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과 공공근로사업 일당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상시고용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분야와 비적용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어, 만약 현재의 최저임금이 시장임금 수준이나 그 수준을 상회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분야의 실업이 증가한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는 비적용분야인 10인 미만 사업체로 이동하여 실업이 흡수되는 상황의 설정도 가능하다.

비록 실증분석의 결과는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외국의 경우처럼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만일 외국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청년층 실업의 증가가 우려된다면 성인의 최저임금과 청년층의 최저임금을 이분화(two-tiers)하거나 다분화(multi-tiers)하는 방법도 고려할 시기라 하겠다.

주석 1) 수요독점의 경우 MRC곡선이 공급곡선위로 우상향하는 이유는 일반 미시경제학책, 예를 들면 Good and Ferguson, 1980, pp. 401~403 등을 참조.

주석 2) Daniel hamermesh's comments on Card and Kureger(1995).

주석 3) U.S.A.(1995).

주석 4) Ehrenberg and Smith(1996: 126).

주석 5) 이외에도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공정경쟁의 확보, 노사관계의 안정촉진 등이 있다.

### 3.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 적용범위에 있어 적용 제외 또는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① 노동생산성이 평균보다도 낮은 노동자(연소자, 장애자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고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곤란한 노동자(가사 사용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공적부문의 규제를 받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에만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에 대한 적용배제는 없고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에 관한 최저임금법은 운수성에서 소관하여 전면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관계직원, 지방공무원의 일부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에 고용된 실업자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노동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기준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개별적인 적용제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일본뿐 아니라 외국의 최저임금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심신의 장애에 따라 또는 노동능력이 낮은 노동자, 도제·견습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 최저임금법 제8조는, 이 적용제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다음에 열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최저임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기준국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노동능력이 낮은 자
2. 試用기간중의 자
3.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64호) 제2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아 행해진 직업훈련중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 및 이에 관계된 지식을 습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받은 자이고 노동성령으로 정할 것
4. 소정근로시간이 특히 짧은 자 기타의 노동성령으로 정한 자

또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라는 것은, 법 제8조 1, 2, 3, 4호의 노동자에 대하여 다른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액과는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나 이러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노동자에 대해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법 제8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소정양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3통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게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가 지역 또는 산업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에 따라 생계비의 수준이 다르고 산업에 따라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의 사업체규모에 따른 최저임금제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작 보호가 시급한 영세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999년부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전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실업의 증가와 함께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전사업체 규모에 확대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법도 이에 알맞게 적용확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4. 최저임금제와 임금불평등도 및 빈곤과의 관계

최저임금의 변동이 사회전체의 임금소득불평등도와 빈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불평등도의 개선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빈곤의 퇴치에는 그 영향력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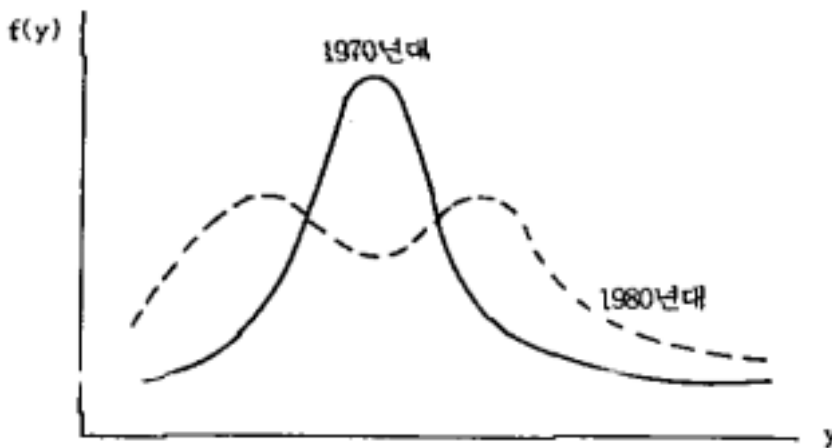
##### 가.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도

선진국의 대다수는 현재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미국은 경기호조와 고용의 창출로 실업률이 4%대로 이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는 소위 중산층의 몰락으로 표현되는 임금소득격차의 확대이다. 임금소득의 불평등도 확대와 고용의 창출이 정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점이지만<sup>1)</sup> 지나친 임금격차의 확대는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선진국에 있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반적인 소득분포의 변화는 [그림 V-4] 로 대변되어 진다. 그림에서  $f(y)$ 는 소득 또는 임금을 의미하며 중간소득층의 인력이 어떤 사람은 저소득화되고 어떤 사람은 고소득화되어 중간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원인이 모두 실질최저임금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는 아니지만,<sup>2)</sup> 최근 미국의 한 연구는 1979년과 1993년 사이의 남

[그림 V-4] 선진국의 소득분포 변화



성 임금소득불평등도 증가의 20%와 여성 임금소득불평등도의 30%가 실질최저임금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우리나라의 경우도 임금소득불평등도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데, <표 V-2> 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과 1989년의 임금소득불평등도의 하락이 약간 높아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임금소득불평등도는 1993년 이후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V-2>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D9/D1	4.51	4.38	4.24	4.14	3.99	3.89	3.97	3.63	3.75	3.61	3.64	3.75

주 : D9는 임금분포를 10등분한 경우 임금십분위수의 9분위를 의미하며, D1은 1분위를 의미함.

따라서 이 비율이 클수록 임금소득불평등도는 커지게 됨을 의미함.

자료 : 「임금구조기초통계조사보고서」, Tape, 각년도에서 계산.

#### 나. 최저임금과 빈곤

최저임금의 상승이 빈곤의 퇴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주변의 근로자들이 빈곤한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빈곤한 가구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빈곤을 퇴치한다는 구호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Ehrenberg and Smith, 1996: 127),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3.35달러에서 4.24달러로 인상되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된 근로자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근로자는 22%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고용에의 영향이 없다면, 1991년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한 소득증가의 경우에 단지 19%만이 빈곤가구에 귀속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빈곤퇴치를 추구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증분석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대상의 계층이 주로 청년층의 근로자에 국한된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빈곤을 퇴치하면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빈곤한 가구에 대하여 일을 한 만큼에 보조금을 주는 저소득근로자가구지원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빈곤퇴치라는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한 점도 있지만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제도라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와 Food Stamps제도는 빈곤가구의 소득보조에 중점을 둔 제도임). 이 제도의 단점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나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대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실직자(빈곤한 가구)에 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4)</sup>

주석 1) 어수봉 · 유경준 · 강순희(1997: 97) 참조.

주석 2) 미국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증가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사(1997) 참조.

주석 3) DiNardo, Lemieux and Fortin in U.S.A.(1995).

주석 4) EITC에 대해서는 신동균(1998)과 유경준(1998) 참조.

參考文獻

- 강순희, 『1995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3.
- 김초일, 『식료품비 산정방법』,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997.
- 산동균, 『미국의 저소득근로가구지원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1998. 4.
- 어수봉·유경준·강순희,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7. 12.
- 유경준,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7.
- \_\_\_\_\_, 『미국의 저소득근로가구지원제(Earned Income Tax Credit)』,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1998. 5.
- \_\_\_\_\_,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6. 7.
- 윤진호, 『도시근로자 생계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6. 2.
- 정인수, 『1996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6. 6.
- 조우현, 『'87, '88 표준생계비의 산정과 몇가지 문제점』, 한국경제연구 제 38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0. 6.
- 국민연금실무편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1996.
-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1993~96.
- 물가정보사, 『종합물가정보』, 1996. 12. 및 1997. 12.
- 의료보험업무편람, 『표준보수월액조건표』(령 제181조).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7. 12.
- \_\_\_\_\_, 『1995. 9~1996. 8 적용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1997. 12.
- \_\_\_\_\_, 『최저임금심의편람』, 1997. 12.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4, 1995, 1996.
- \_\_\_\_\_, 『도시가계조사』, 원TAPE 1993, 1994, 1995, 1996.

- 한국경제신문사, 「계층간 격차심화 : 미국경제의 새로운 문제」, 『서강 Harvard Business』, Vol. 72, Richard Freeman, 최강식 역.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임금교섭을 위한 활용자료』, 1997.
- 한국물가협회, 『월간물가자료』, 1996. 12 및 1997. 12.
- Abowd, John, Francis Kramarz, Thmas Lermieux, and David Margolis, "Minimum Wages and Youth Employment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ersity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July 1995.
- Card, David, "Do Minimum Waged Reduce Employment? A Case Study of California, 1987~89",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No 46, 1992.
- Daniel Hamermesh's comments on Card and Krueger,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1995),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No. 48, July 1995.
- Dickens, Richard, Stephen Machin, and Alan Manning,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Dispersion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U.K. Wage Council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No. 47, 1994.
- Ehrenberg, Ronald G. and S. Robert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1994.
- Ehrenberg and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6th ed., Addison Wesley, 1996.
- Good, J. P. and C. E. Ferguson, *Microeconomic Theory*, 5th ed., Richard D. Irwin Inc, 1980.
- Katz, Lawrence and Alan Krueger,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the Fast Food Industr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No. 46, 1992.
- OECD, *The OECD Jobs Study Part II*, 1994.
- U.S.A., *Democratic Staff of the House Economic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Committee*, 1995.

## 附錄

### [附錄 1] 最低賃金制에 관한 ILO 協約

· 1928년 6월 16일, ILO 제11회 총회는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창설에 관한 협약」(제26호) 및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에 관한 권고」(제30호)를 채택하였고, 그 후 1970년 6월 22일, 제54회 총회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 및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권고」(제135호)를 채택하였다. ILO는 1919년 제1회 총회 이래, 많은 협약·권고를 채택하였지만, 당초에는 여자·연소자의 보호, 최저연령, 노동시간의 제한, 週休制, 안전위생, 혹은 재해보상 등에 관한 것이 많았고, 제10회 총회(1927년)에 이르러 최저임금의 문제가 논제로 되어 제11회 총회에서 비로소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회입법으로서, 외국의 법제에서도 최저임금제는 비교적 고도의 것이었고, 노동보호입법의 최종단계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1928년 당시에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기타 약간의 유럽제국, 미국의 여러 주, 아르헨티나 등 몇 개의 나라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나라의 법제를 보면 임금심의회 방식, 법정 방식, 중재재정 방식 혹은 노동협약의 확장적용에 의한 사례도 보이고, ILO로서도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획일적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오히려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의 실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각국에서는 고용노동에 한정된 것, 가내노동에 한정된 것, 혹은 양자를 포함한 것, 다시 이들의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 등이 있지만, ILO는 특정하지 않고, 단 노동협약 등을 체결할 수 없는 저임금층이 그 주된 대상인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최저연령 등의 결의와 달리,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금액, 결정기준,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각국에 위임한다는 입장을 ILO가 가졌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창설에 관한 협약」(제26호)의 골자로 보이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점이다.

(1) 노동협약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임금을 유효하게 규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고 더구나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특히 가내노동의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

(2) 가맹국은 관계 노사단체가 존재할 때는 그들과 협의하여 어느 산업에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는 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는 것

(3) 가맹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질, 형태 및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지만,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① 최저임금결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앞서 관계 노사대표자 및 중립의 전문가와 협의할 것

② 고나계 노사는 국내의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 다만 여하한 경우에도 평등한 수 및 조건에서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용에 참여할 것

덧붙여 동 협약은 기타 최저임금률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 관계 노사에게 주지시킬 것, 감독제재 및 노동자의 지불부족액의 법적 절차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요건은 최저임금제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고 앞에 서술한 (1) 내지 (3)이 ILO의 최저임금제의 어느 면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ILO의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은 제26호 협약 등을 보충하여 부당하게 낮은 임금에 대하여 임금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가맹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임금노동자 전체의 집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설치할 것

(2)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국내관행 및 국내사정과의 관련에서 가능하거나 적당한 한에서 다음을 포함할 것

① 노동자 및 그 가족이 필요한 국내임금의 일반적 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부 및 여타의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에 넣을 것

② 경제개발상의 요청,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 또는 유지해야 하는 요청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최저임금에 관한 ILO의 주된 권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에 관한 권고」(제30호) 및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권고」(제135호)이고, 제30호 권고의 골자는 다음의 3가지 점이다.

- (1) 최저임금결정제도 운용에서 당연한 것은 당해 산업의 관계조건을 조사하여 노사쌍방과 협의하여 그 의견을 균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 (2) 최저임금 결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노사의 대표를 참가시킬 경우에도 가부동수의 경우에 유효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자를 참가시킬 것
- (3) 최저임금률을 결정하는데 마땅히 노동자가 적당한 생활표준을 유지가능할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사 노동자의 임금을 참조할 것

또한 제135호 권고의 골자는 다음의 2가지 점이다.

- (1)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마땅히 다음의 기준에 대한 고려를 할 것
  - ① 노동자 및 그 가족의 필요
  - ② 국내임금의 일반적 수준
  - ③ 생계비 및 그 변동
  - ④ 사회보장급부
  - ⑤ 여타의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
  - ⑥ 경제적 요소(경제개발상의 요청,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 및 유지한다는 요청을 포함)
- (2) 최저임금결정제도는 다음 방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 같은 각종 형태를 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
  - ① 법령
  - ②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여타 기관에서의 권고를 고려할 것에 관하여 정규의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불문함)
  - ③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회의 결정
  - ④ 노동재판소 또는 노동위원회
  - ⑤ 노동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적 효력의 부여

[附錄 2] 1997年 最賃審生計費 算定

<부표 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단위 : 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비지출계 <sup>1)</sup>	1,009,270	1,134,518	1,404,523	1,493,567	1,460,341	1,506,526	1,586,482	1,562,472
식료품 <sup>2)</sup>	278,398	321,951	391,903	428,428	486,553	434,472	498,933	632,327
주거비	44,945	51,282	55,893	41,145	24,504	56,357	7,488	63,141
경열·수도	41,689	49,839	57,434	70,172	82,415	67,157	54,615	94,396
가구·집기	46,095	67,632	64,186	62,452	30,430	49,886	35,253	134,336
피복·신발	79,923	82,478	103,385	96,824	87,906	126,490	159,827	106,168
보건·의료	58,655	55,687	64,816	77,773	57,269	128,491	125,293	99,040
교육·교양	73,265	135,623	251,522	310,768	267,368	314,810	249,040	151,218
교통·통신	150,057	138,573	167,062	144,281	165,347	87,005	188,550	92,108
기타 소비	236,243	231,453	248,322	258,724	258,549	240,858	267,483	190,738
소비지출계 <sup>3)</sup>	1,356,148	1,518,331	1,882,815	2,015,954	2,147,316	1,931,401	1,939,432	1,875,177
주거비 <sup>4)</sup>	337,211	372,476	491,788	526,565	698,691	407,564	360,439	277,995
비소비지출 <sup>4)</sup>	71,578	94,919	145,399	125,767	182,772	78,137	123,560	106,141
계	674,711	818,054	1,074,971	1,179,718	879,022	548,169	1,679,246	1,380,770

- 주 : 1)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2)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한 수치임.  
 3) 조세와 사회보장, 기타 비소비의 합계를 의미함.  
 4) '취업심생계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한 수치임.

<부표 2> 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소비지출액 비교



(단위 : 원)

	표준가구 전체(A)	최빈값계층 가구(B)	B/A
2인	1,356,148	970,152	0.72
3인	1,518,331	1,096,248	0.72
4인	1,882,815	1,322,085	0.70
5인	2,015,954	1,376,734	0.68
6인	2,147,316	1,308,481	0.61
7인	1,931,401	1,419,603	0.74
8인	1,939,432	1,699,173	0.88
9인	1,875,177	1,667,290	0.89

<부표 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a	b	R <sup>2</sup>
소비지출	-40,524	473,417	0.93
식료품	-8,875	112,468	0.87
주거비	-11,333	126,766	0.67
광열·수도	-1,036	17,157	0.65
가구·집기	-1,328	12,731	0.21
피복·신발	-2,631	26,333	0.41
보건·의료	-2,093	19,593	0.24
교육·교양	4,465	11,617	0.49
교통·통신	-3,800	35,856	0.55
기타 소비	-7,862	73,801	0.65

주 : 모든 변수의 t값은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432,893	784,738	1,055,535	1,245,284	1,353,985	1,381,638
식료품	103,593	189,436	257,529	307,872	340,465	355,308
주거비	115,433	208,200	278,301	325,736	350,505	352,608
광열·수도	16,121	30,170	42,147	52,052	59,885	65,646
가구·집기	11,403	20,150	26,241	29,676	30,455	28,578
피복·신발	23,702	42,142	55,320	63,236	65,890	63,282
보건·의료	17,500	30,814	39,942	44,884	45,640	42,210
교육·교양	16,082	41,094	75,036	117,908	169,710	230,442
교통·통신	32,056	56,512	73,368	82,624	84,280	78,336
기타 소비	65,939	116,154	150,645	169,412	172,455	159,774

<부표 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0.31	0.56	0.75	0.89	0.96	0.98
식료품	0.26	0.48	0.66	0.79	0.87	0.91
주거비	0.23	0.42	0.57	0.66	0.71	0.72
광열·수도	0.28	0.53	0.73	0.91	1.04	1.14
가구·집기	0.18	0.31	0.41	0.46	0.47	0.45
피복·신발	0.23	0.41	0.54	0.61	0.64	0.61
보건·의료	0.27	0.48	0.62	0.69	0.70	0.65
교육·교양	0.06	0.16	0.30	0.47	0.67	0.92
교통·통신	0.19	0.34	0.44	0.49	0.50	0.47
기타 소비	0.27	0.47	0.61	0.68	0.69	0.64

<부표 6>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단위 : 원)

	전체가구평균치(A)	4인가구 추정치(Y <sub>4</sub> )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Y <sub>h</sub> )	4인가구환산치 (A × Y <sub>4</sub> ÷ Y <sub>h</sub> )
주거비	436,881	325,736	305,553	465,739
광열·수도	54,165	52,052	47,478	59,383
가구·집기	61,556	29,676	28,351	64,432
피복·신발	92,758	63,236	60,068	97,651
보건·의료	62,491	44,884	43,028	65,187
교육·교양	194,173	117,908	95,695	239,245
교통·통신	153,494	82,624	79,115	160,303
기타 소비	242,350	169,412	162,339	252,909

<부표 7>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3	190,953	260,814	316,703	349,304
광열·수도	17,815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41,990	55,6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116,338	154,274	174,507	184,624
영겉계수	34.0	34.1	33.6	33.6	33.1

주 :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부표 8>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추정근로소득	542,397	998,607	1,392,299	1,666,361	1,861,218
조세 및 사회 보장분담금계	17,467	45,939	70,325	86,572	100,743
조세액	0	12,320	25,316	32,293	38,840
소득세	0	11,460	23,550	30,040	36,130
주민세	0	860	1,766	2,253	2,710
사회보장분담금	17,467	33,620	45,009	54,279	61,904
의료보험	6,840	13,224	17,632	21,280	24,320
국민연금	9,000	17,400	23,200	28,000	32,000
고용보험료	1,627	2,996	4,177	4,999	5,584

<부표 9>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추정근로소득	542,397	998,607	1,392,299	1,666,361	1,861,218
조세 및 사회보장	17,467	45,939	70,325	86,572	100,743
비소비지출	18,057	47,118	72,093	88,930	103,691
조세액	0	12,320	25,316	32,293	38,840
소득세	0	11,460	23,550	30,040	36,130
주민세	0	860	1,766	2,253	2,710
사회보장분담금	17,467	33,620	45,009	54,279	61,904
의료보험	6,840	13,224	17,632	21,280	24,320
국민연금	9,000	17,400	23,200	28,000	32,000
고용보험료	1,627	2,996	4,177	4,999	5,584
기타 비소비	590	1,179	1,768	2,358	2,948

<부표 10> 가구별 최임심생계비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33,918	347,134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117,92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3	81,970	190,953	260,814	316,703	349,304
편의·수도	17,815	14,252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9,794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18,749	41,990	55,6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14,08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13,398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24,366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52,605	116,338	154,274	174,507	184,624
비소비지출	18,057	17,732	47,118	72,093	88,930	103,691
조세액	0	0	12,320	25,316	32,293	38,840
사회보장	17,467	17,142	33,620	45,009	54,279	61,904
기타 비소비	590	590	1,179	1,768	2,358	2,948
최임심생계비	451,975	364,866	846,004	1,185,932	1,422,019	1,592,666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